



2020 보령시 노인통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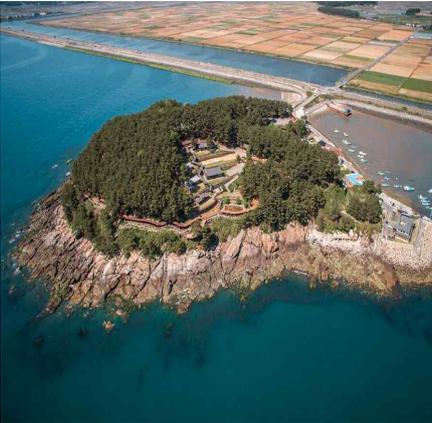
20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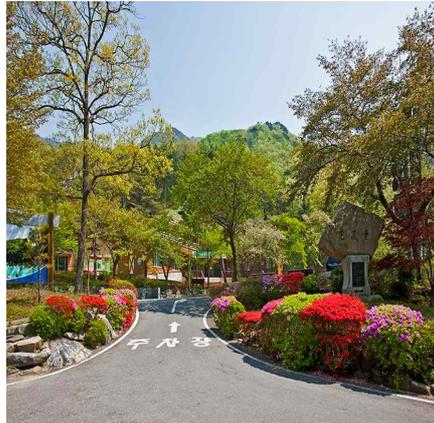
보령 9景 플러스



1경 대천海水욕장



2경 죽도(상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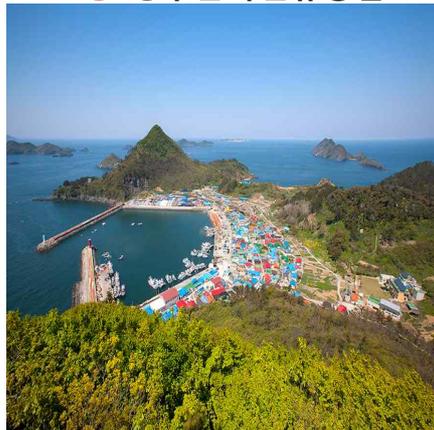
3경 성주산자연휴양림



4경 개화예술공원



5경 무창포海水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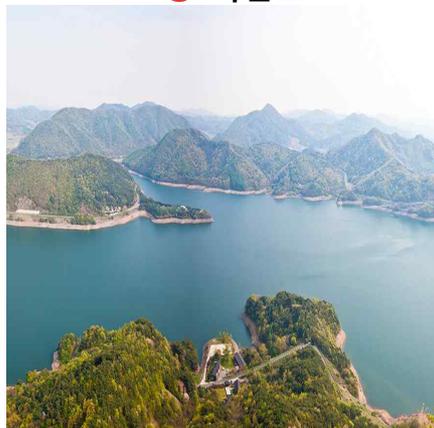
6경 외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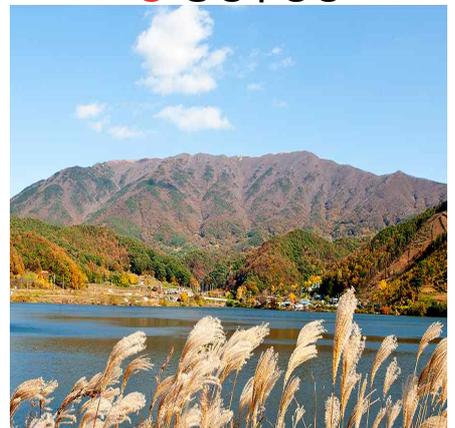
7경 충청수영성



8경 냉풍욕장



9경 보령호



9경 플러스 오서산

보령 9味



1미 천북 굴구이



2미 사현포도



3미 주꾸미



4미 간재미 무침



5미 꽃게탕



6미 보령산 돌김



7미 키조개 요리



8미 조개구이



9미 해물칼국수



『2020 보령시 노인통계』 발간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늘어가는 노인인구와 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보령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는데, 이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 71년, 짧게는 일본이 24년 걸린 변화가 채 20년도 안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802만 6,91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4.69%(37만 6,507명)가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 증가율(0.05%)과 비교하면 90배 이상 차이날 만큼 심각한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 시 노인인구는 25.4%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령시 노인통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논리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처음 발간된 통계집에는 5개 분야 88개 항목에 걸쳐 우리 시 노인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번 통계집이 우리 시 노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써 노인복지와 일자리, 건강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소중한 자료로 쓰이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노인통계』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보령시장 김 동 일

이용자를 위하여

1. 「보령시 노인통계」는 보령시 각 실·과, 소속기관,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 및 국내 주요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자료 출처를 표기하였음
2. 지표 중 지역생활 만족도 부문은 「2019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3.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 및 행정자료 입수 사정에 따라 시점(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4.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하위 항목의 합이 그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0"이나 해당숫자 없음
「0.0」: 단위 미만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지표에 한해 5 미만의 수치를 「*」로 표기함
7.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 문화새마을과 새마을팀(☎041-930-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통계 개요	1
1. 통계작성 개요	2
2. 통계 작성기준 및 대상	2
3. 활용자료 및 작성항목	3
4. 통계 생산방법	3
II. 작성 결과	5
1. 인구·가구	6
1-1. 노인인구 규모	6
1-2. 연령별·성별 노인인구	7
1-3. 읍·면·동별 노인인구	8
<참고>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9
1-4. 노인 전입인구	10
1-5. 노인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외)	11
1-6.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12
1-7. 유형별 노인가구	13
1-8. 노인 사망률	14
2. 경 제	15
2-1.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15
2-2. 노인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주택 수	16
2-3.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주택 수	17
2-4. 주택유형별 노인 소유 주택 수	18
2-5.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건축물 현황	19

3. 일자리·연금	20
3-1. 노인 구직신청 건수	20
3-2.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21
3-3.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22
3-4.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23
3-5.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24
4. 복 지	25
4-1.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
4-2.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
4-3.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27
4-4.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28
4-5.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29
4-6. 노인복지시설 현황	30
5. 건 강	31
5-1. 노인건강보험 적용인구	31
5-2. 노인 요양급여실적	32
5-3.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	33
5-4. 노인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34
5-5. 노인 주요 암 진료인원	35
5-6.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36
Ⅲ. 통계표	37
◎ 통계표 목차	38
◎ 보령시 여성통계 통계표	42

IV. 주요 용어 및 해설 83

◎ 주요 용어 및 해설 84

V. 행정자료 서식 95

◎ 행정자료 서식 96



I

통계 개요



「보령시 노인통계」 개요

1. 통계작성 개요

가. 작성목적

- 보령시 노인의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연금, 복지, 건강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노인의 통계를 생산·분석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나.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일반·가공통계)
- 승인번호 제693003호(2020.12.18.)

다. 작성연혁

- 2020년 11월 최초 작성

라. (작성주기) 2년

2. 통계 작성기준 및 대상

가. (작성 기준시점) 2020년 4월 30일 기준

※ 단, 일부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대상 기간(시점)의 차이가 있음

나. (작성대상) 2020년 4월 30일 기준 보령시 노인인구

※ (노인인구)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함.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하나,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 미만인 자

다. (통계 작성 단위) 노인 개인

3. 활용자료 및 작성항목

□ 행정자료

행정자료	제공기관	주요 작성항목
주민등록인구 자료	보령시	연령별, 성별 노인 인구
재산세 자료	보령시	노인 주택소유자 현황, 유형별 주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인구
장애인등록 자료	보령시	장애유형별, 정도별 노인 장애인등록 인구
고용보험 자료	고용노동부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구직자 자료	고용노동부	노인 구직자의 근무희망 직종, 근무희망 지역
국민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노인 국민연금 가입인구, 수급규모
건강보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주요 질병별 진료인원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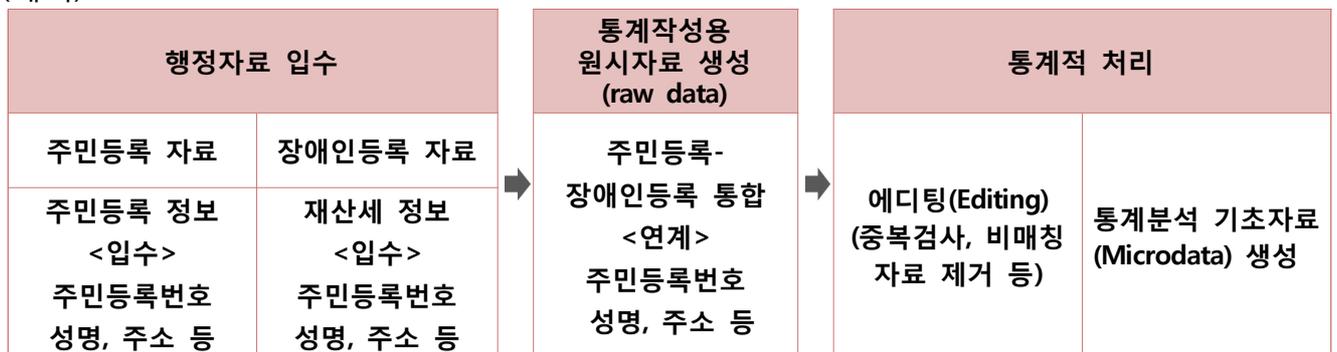
□ 기타 통계자료

통계자료	제공기관	주요 작성항목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노인인구 규모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노인 전출입인구, 전입 전 거주지
인구총조사	통계청	가구원수별, 유형별 노인가구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노인 사망률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청 MDIS	노인 월평균 가구 소득

4. 통계 생산방법

□ 행정자료 연계 및 가공 개인별 대체식별코드(성명+생년월일+성별 등)를 생성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에디팅(editing) 등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기초자료(microdata)를 구축한 뒤 통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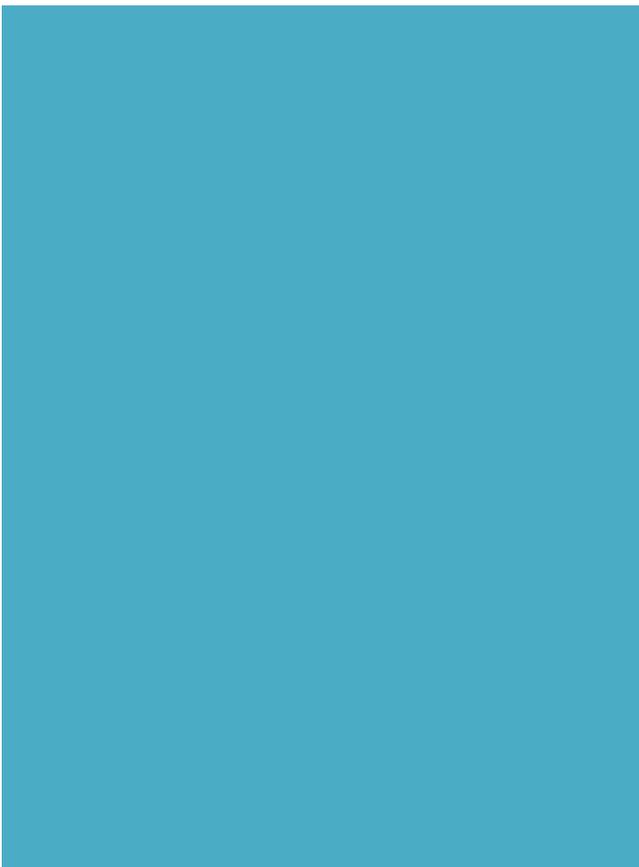
(예시)





II

작성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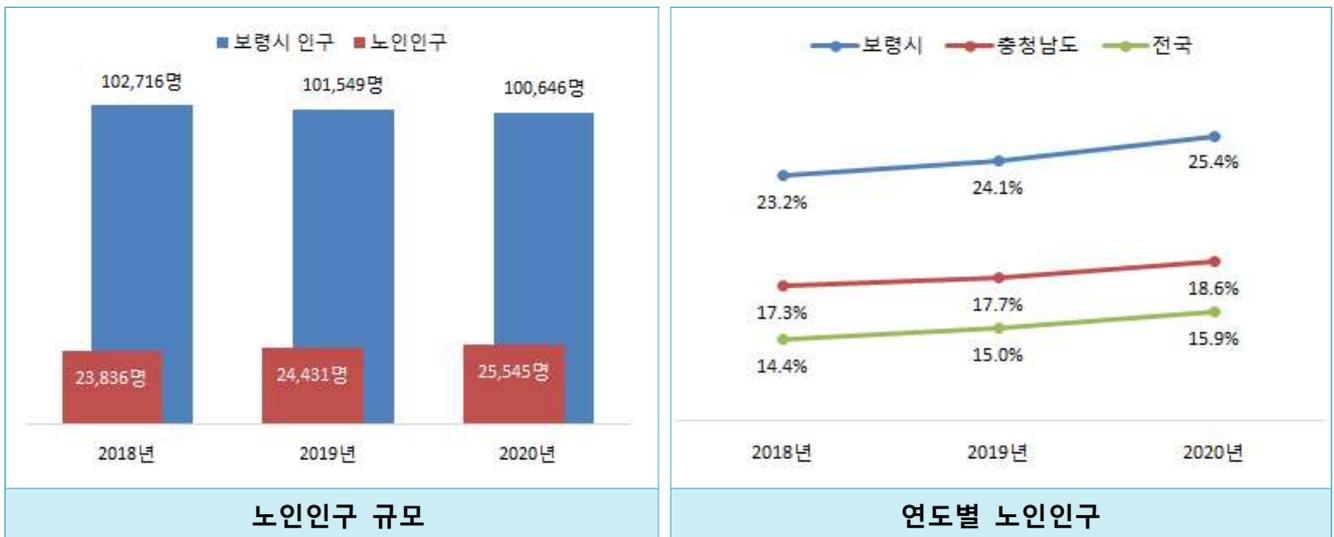
1. 인구 · 가구¹

1-1. 노인인구 규모

보령시 노인은 100,646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함

- (노인인구) 보령시 노인인구는 2018년 23,836명에서 2020년 25,545명으로 증가함
- (노인인구 비율) 보령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과 충청남도의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고, '18년 23.2%, '19년 24.1%, '20년 25.4%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함

<그림 1-1> 노인인구 인구



<표 1-1> 노인인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보령시		
	노인 (A)	인구 (B)	노인 비율 (A/B×100)	노인 (C)	인구 (D)	노인 비율 (C/D×100)	노인 (E)	인구 (F)	노인 비율 (E/F×100)
2020년	8,229,428	51,842,524	15.9	394,476	2,118,457	18.6	25,545	100,646	25.4
2019년	7,773,471	51,836,763	15.0	377,081	2,125,912	17.7	24,431	101,549	24.1
2018년	7,464,608	51,790,131	14.4	366,483	2,120,666	17.3	23,836	102,716	23.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별 4월 기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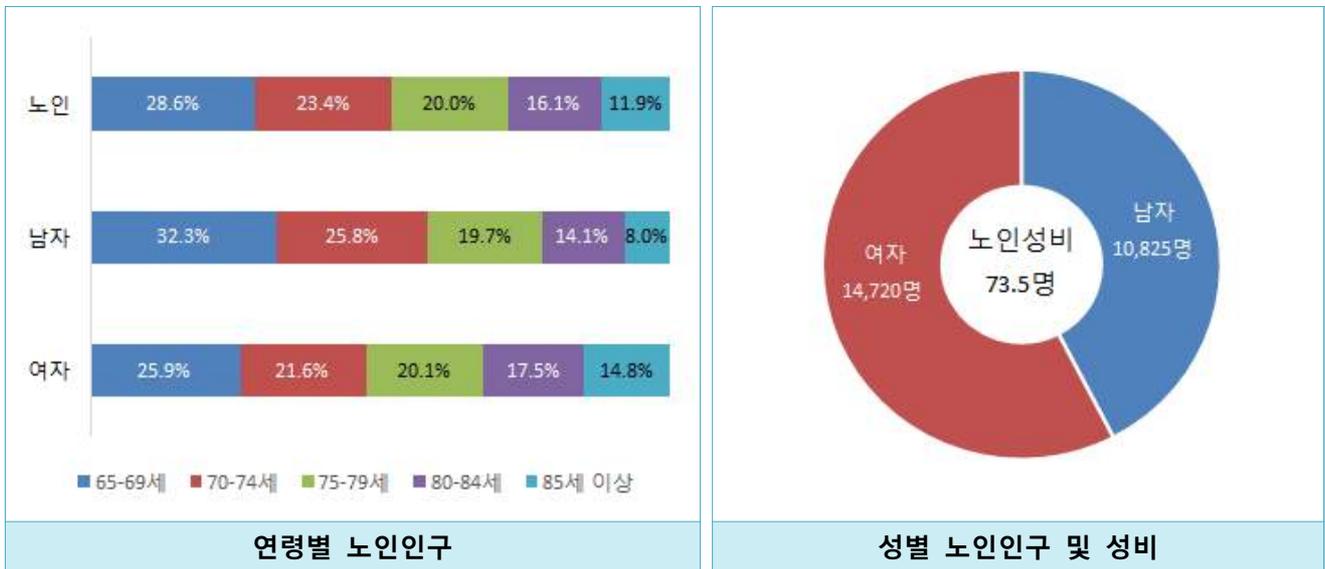
1.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4월 30일 기준 보령시 거주자 산정 (외국인 제외)

1-2. 연령별·성별 노인인구

노인인구 중 「65-69세」가 28.6%(7,305명)로 가장 많고, 전체 노인 성비는 73.5명임

- (연령별) 보령시 노인 중 「60-65세」가 28.6%(7,305명)로 가장 많고, 「85세 이상」이 11.9%(3,048명)로 가장 적음
- (성별) 노인인구 중 남자가 10,825명, 여자가 14,72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으며 성비는 73.5명임

<그림 1-2> 연령별·성별 노인인구



<표 1-2> 연령별·성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인구		남자 (A)		여자 (B)		성비 ¹⁾ (A/B×10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노인	25,545	100.0	10,825	100.0	14,720	100.0	73.5
65-69세	7,305	28.6	3,498	32.3	3,807	25.9	91.9
70-74세	5,984	23.4	2,798	25.8	3,186	21.6	87.8
75-79세	5,097	20.0	2,137	19.7	2,960	20.1	72.2
80-84세	4,111	16.1	1,529	14.1	2,582	17.5	59.2
85세 이상	3,048	11.9	863	8.0	2,185	14.8	39.5

자료: 보령시 「주민등록인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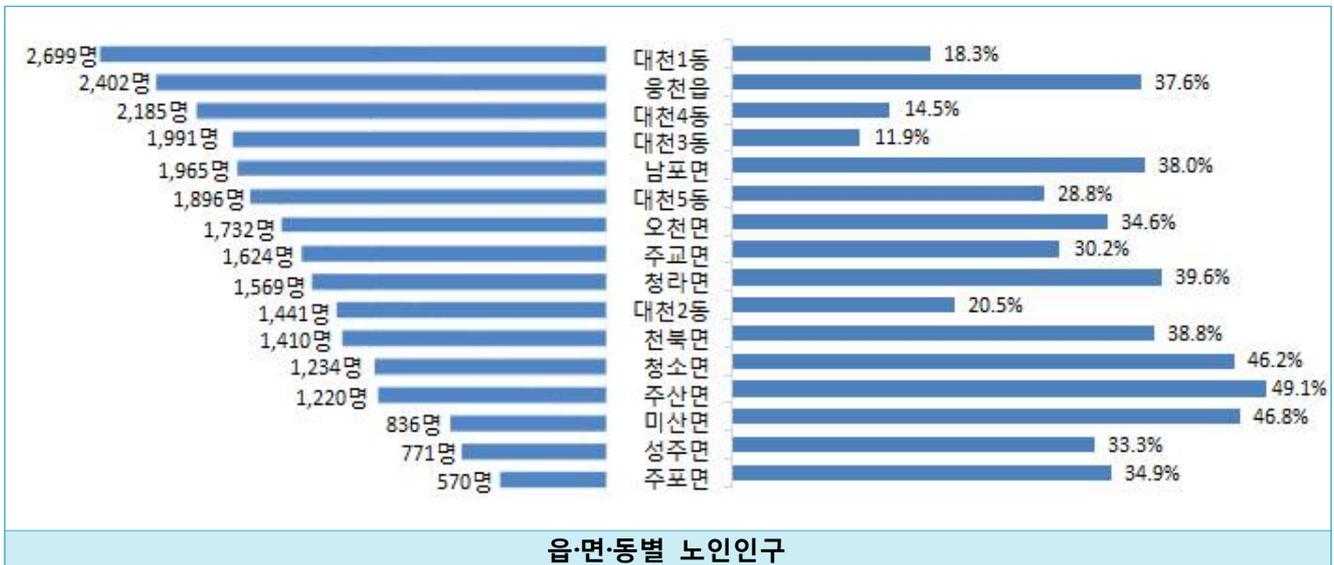
1)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 남성 인구/여성 인구×100

1-3. 읍·면·동별 노인인구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천3동」 8,379명이며,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소면」 50.6%임

- (읍·면·동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천1동」 2,699명이며, 「주포면」이 570명으로 가장 적음
-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은 「주산면」이 49.1%로 가장 높고, 「대천3동」이 11.9%로 가장 낮음

<그림 1-3> 읍·면·동별 노인인구 및 비율



<표 1-3> 읍·면·동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A)		노인인구 (B)		노인인구 비율 (B/Ax10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보령시	100,646	100.0	25,545	100.0	25.4
웅천읍	6,382	6.3	2,402	9.4	37.6
주포면	1,633	1.6	570	2.2	34.9
주교면	5,381	5.3	1,624	6.4	30.2
오천면	5,011	5.0	1,732	6.8	34.6
천북면	3,632	3.6	1,410	5.5	38.8
청소면	2,672	2.7	1,234	4.8	46.2
청라면	3,966	3.9	1,569	6.1	39.6
남포면	5,177	5.1	1,965	7.7	38.0
주산면	2,483	2.5	1,220	4.8	49.1
미산면	1,787	1.8	836	3.3	46.8
성주면	2,314	2.3	771	3.0	33.3
대천1동	14,763	14.7	2,699	10.6	18.3
대천2동	7,026	7.0	1,441	5.6	20.5
대천3동	16,797	16.7	1,991	7.8	11.9
대천4동	15,029	14.9	2,185	8.6	14.5
대천5동	6,593	6.6	1,896	7.4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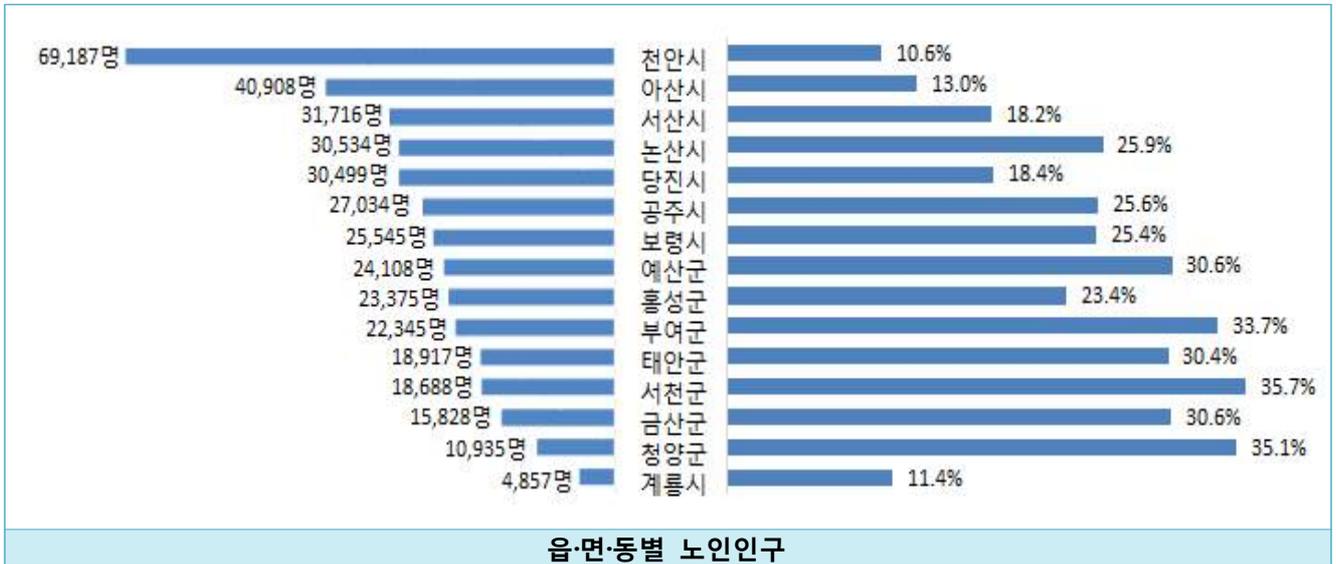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4월 기준 자료, 보령시 「주민등록인구자료」

<참고>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보령시 노인인구는 25,54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5.4%를 차지

- (노인인구) 보령시 노인인구는 25,545명으로 충청남도 8개시 중 7번째로 많음
- (노인인구 비율) 보령시 노인인구 비율은 25.4%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9번째로 높음

<그림 1-4>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표 1-4>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노인 (A)		인구 (B)		노인 비율 (A/B×10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충청남도	394,476	100.0	2,118,457	100.0	18.6
천안시	69,187	17.5	654,251	30.9	10.6
공주시	27,034	6.9	105,743	5.0	25.6
보령시	25,545	6.5	100,646	4.8	25.4
아산시	40,908	10.4	313,757	14.8	13.0
서산시	31,716	8.0	174,645	8.2	18.2
논산시	30,534	7.7	118,032	5.6	25.9
계룡시	4,857	1.2	42,757	2.0	11.4
당진시	30,499	7.7	166,136	7.8	18.4
금산군	15,828	4.0	51,781	2.4	30.6
부여군	22,345	5.7	66,214	3.1	33.7
서천군	18,688	4.7	52,374	2.5	35.7
청양군	10,935	2.8	31,139	1.5	35.1
홍성군	23,375	5.9	99,973	4.7	23.4
예산군	24,108	6.1	78,726	3.7	30.6
태안군	18,917	4.8	62,283	2.9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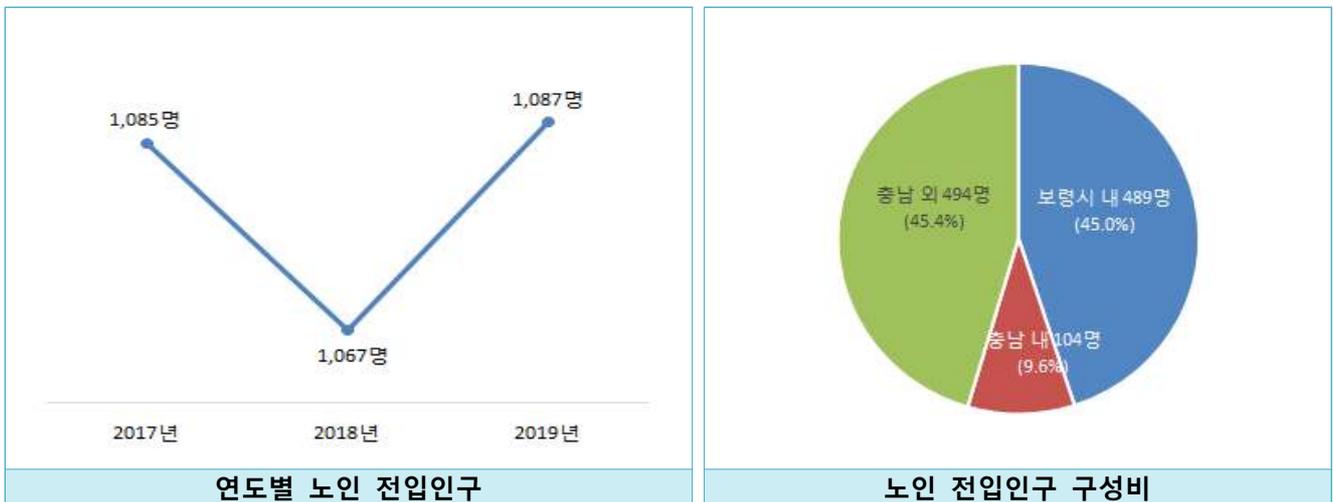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4월 기준 자료

1-4. 노인 전입인구¹⁾

'19년에 보령시로 전입한 노인은 1,087명이며, 그 중 「충남 외」에서 전입한 노인이 494명으로 가장 많음

- **(연도별)** 노인 전입인구는 '17년 1,085명에서 '18년 1,06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9년 1,087명으로 다시 증가함
- **(전입인구)** 2019년에 전입한 노인 중 「충남 외」에서 전입한 노인이 494명(45.4%)으로 가장 많고, 「충남 내」에서 전입한 노인은 104명(9.6%)으로 가장 적음

<그림 1-5> 노인 전입인구



<표 1-5> 노인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구분			
		보령시 내	충남 내 ²⁾	충남 외	
2019년	보령시 전체	12,027	5,909	1,379	4,739
	비율	100.0	49.1	11.5	39.4
	노인	1,087	489	104	494
	비율	100.0	45.0	9.6	45.4
2018년	보령시 전체	11,228	5,454	1,354	4,420
	비율	100.0	48.6	12.1	39.4
	노인	1,067	487	128	452
	비율	100.0	45.6	12.0	42.4
2017년	보령시 전체	13,960	7,488	1,499	4,973
	비율	100.0	53.6	10.7	35.6
	노인	1,085	539	109	437
	비율	100.0	49.7	10.0	40.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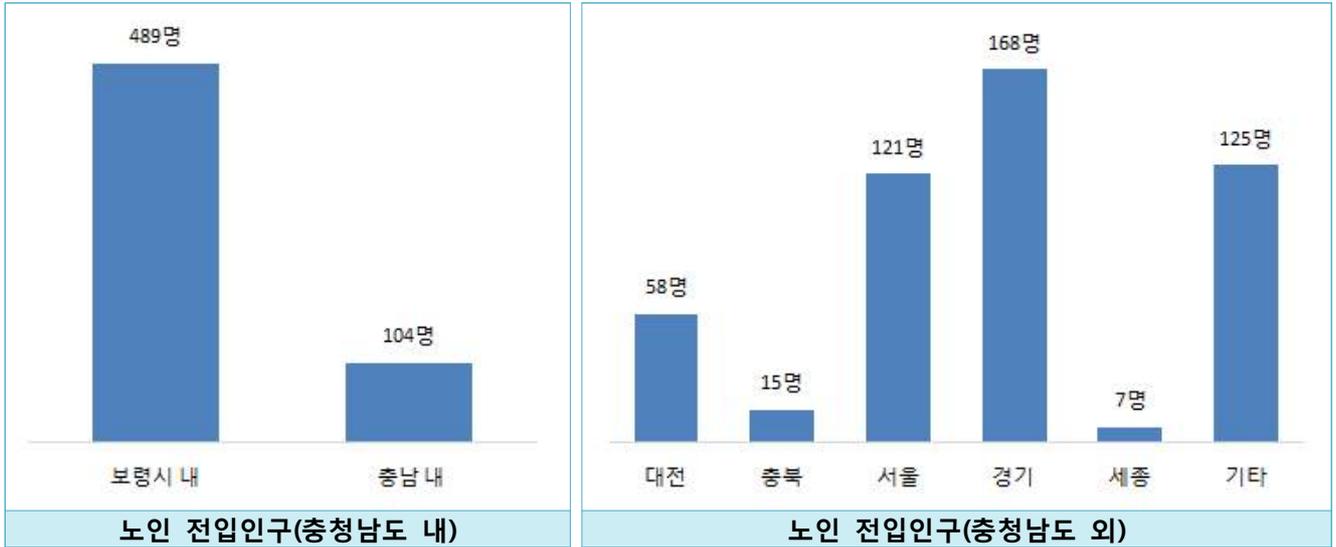
1) 각 연도별 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2) 보령시 내 전입인구 제외

1-5. 노인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외)

「충청남도 외」에서 전입한 노인은 「경기도」가 168명으로 가장 많음

□ (전입 전 거주지) 2019년 「경기도」에서 전입한 노인의 전 거주지는 「경기도」가 168명으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7명으로 가장 적음

<그림 1-5> 노인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



<표 1-5> 노인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보령시 내	충청남도 내	충청남도 외					
				대전	충북	서울	경기	세종	기타
보령시 전체	12,027	5,909	1,379	578	225	883	1,293	137	1,623
비율	100.0	49.1	11.5	4.8	1.9	7.3	10.8	1.1	13.5
노인	1,087	489	104	58	15	121	168	7	125
비율	100.0	45.0	9.6	5.3	1.4	11.1	15.5	0.6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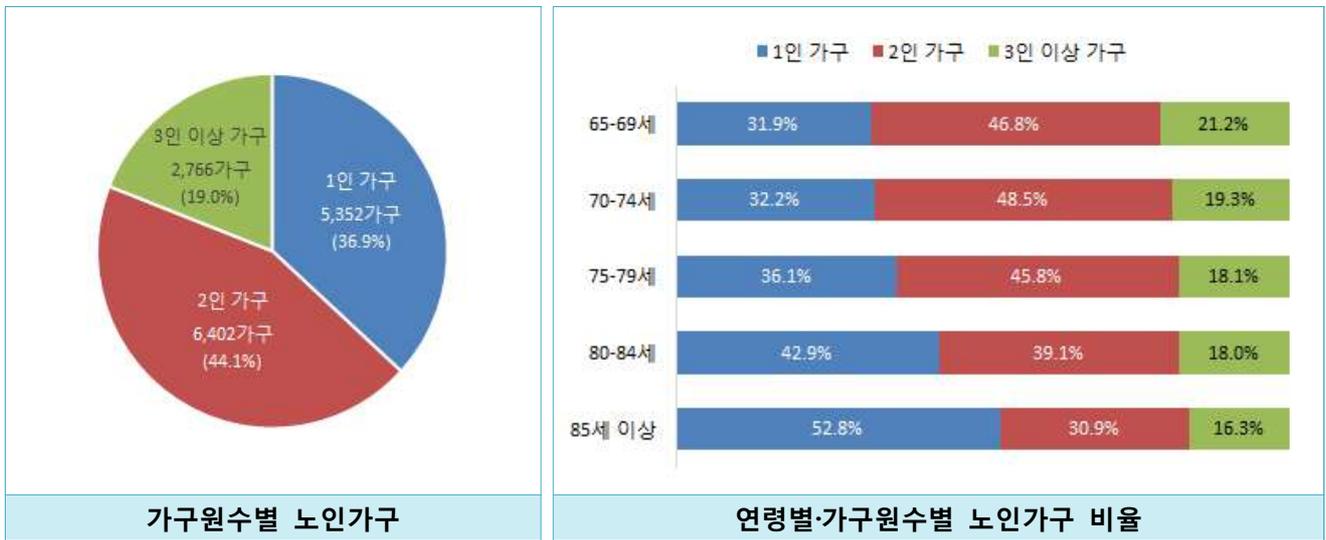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6.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노인가구 중 「2인 가구」가 6,402가구(44.1%)로 가장 많음

- (가구원수별) 보령시 노인가구 중 「2인 가구」가 6,402가구(44.1%)로 가장 많고, 「3인 이상 가구」는 2,766가구(19.0%)로 가장 적음
- (연령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2인 가구」 및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7>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표 1-7>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노인 ²⁾	14,520	5,352	6,402	2,766
비율	100.0	36.9	44.1	19.0
65-69세	3,906	1,247	1,829	830
비율	100.0	31.9	46.8	21.2
70-74세	3,508	1,131	1,701	676
비율	100.0	32.2	48.5	19.3
75-79세	3,176	1,145	1,455	576
비율	100.0	36.1	45.8	18.1
80-84세	2,473	1,060	967	446
비율	100.0	42.9	39.1	18.0
85세 이상	1,457	769	450	238
비율	100.0	52.8	30.9	16.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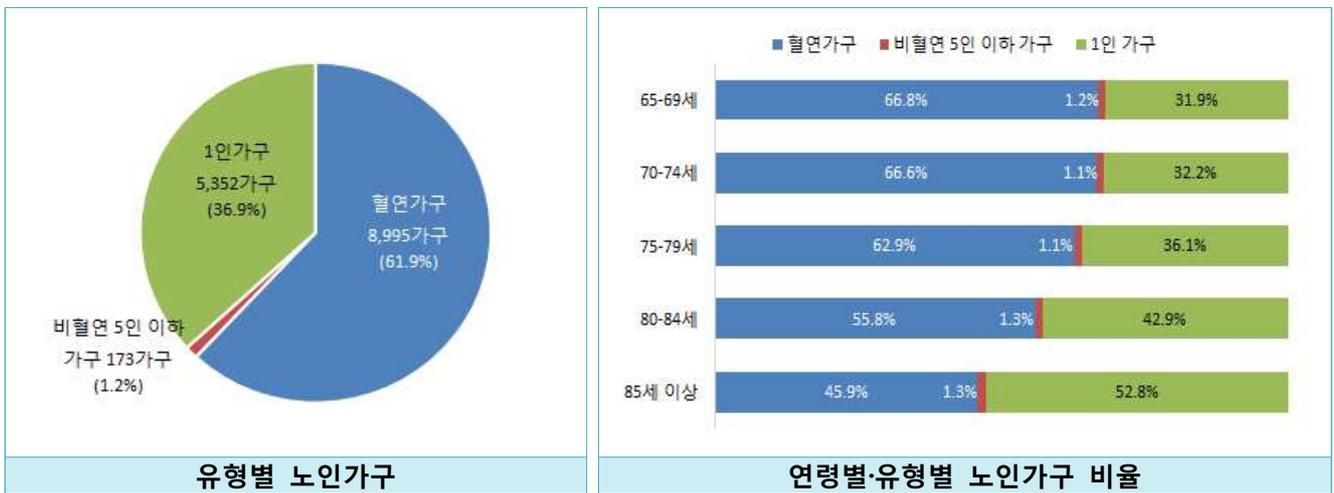
-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2) 일반가구 가구주 중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1-7. 유형별 노인가구

노인가구 중 「혈연가구」가 8,995가구로 가장 많음

- (유형별) 보령시 노인가구 중 「혈연가구」가 8,995가구(61.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 5,352가구(36.9%)순임
- (연령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혈연가구」의 비율은 낮아지고, 「1인가구」의 비율은 높아짐

<그림 1-8> 유형별 노인가구



<표 1-8> 유형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혈연가구 ¹⁾	비혈연 5인이하가구 ²⁾	1인가구 ³⁾
노인	14,520	8,995	173	5,352
비율	100.0	61.9	1.2	36.9
65-69세	3,906	2,611	48	1,247
비율	100.0	66.8	1.2	31.9
70-74세	3,508	2,337	40	1,131
비율	100.0	66.6	1.1	32.2
75-79세	3,176	1,997	34	1,145
비율	100.0	62.9	1.1	36.1
80-84세	2,473	1,381	32	1,060
비율	100.0	55.8	1.3	42.9
85세 이상	1,457	669	19	769
비율	100.0	45.9	1.3	52.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 1) 혈연가족관계로만 구성된 가구
- 2)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
- 3)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8. 노인 사망률¹⁾

2019년 노인 사망률은 3,089.6명이고, 「85세 이상」이 10,993.9명으로 가장 높음

□ (연도별) 2019년 보령시 노인 사망률은 3,089.6명으로 2011년 3,367.2명보다 감소함

□ (연령별) 「85세 이상」이 10,993.9명으로 가장 높고, 「65-69세」가 947.3명으로 가장 낮음

<그림 1-9> 노인 사망률



<표 1-9> 노인 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	3,367.2	3,536.4	3,200.9	3,540.3	3,422.1	3,399.9	3,264.0	3,461.0	3,089.6
65-69세	1,225.1	1,275.0	1,155.0	1,193.1	1,064.1	1,147.9	959.9	945.3	947.3
70-74세	1,618.9	1,807.7	1,782.2	1,890.6	1,682.0	1,862.7	1,743.9	1,891.7	1,582.6
75-79세	3,642.7	3,964.8	3,090.7	2,826.9	3,435.4	2,972.1	2,531.4	3,305.3	2,489.3
80-84세	6,341.0	5,843.8	5,479.5	6,107.9	5,516.4	5,681.3	5,557.9	5,159.6	4,322.7
85세 이상	13,750.0	13,762.7	12,095.0	14,530.2	12,768.2	11,934.6	11,777.7	11,501.2	10,993.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2019

1) 사망률(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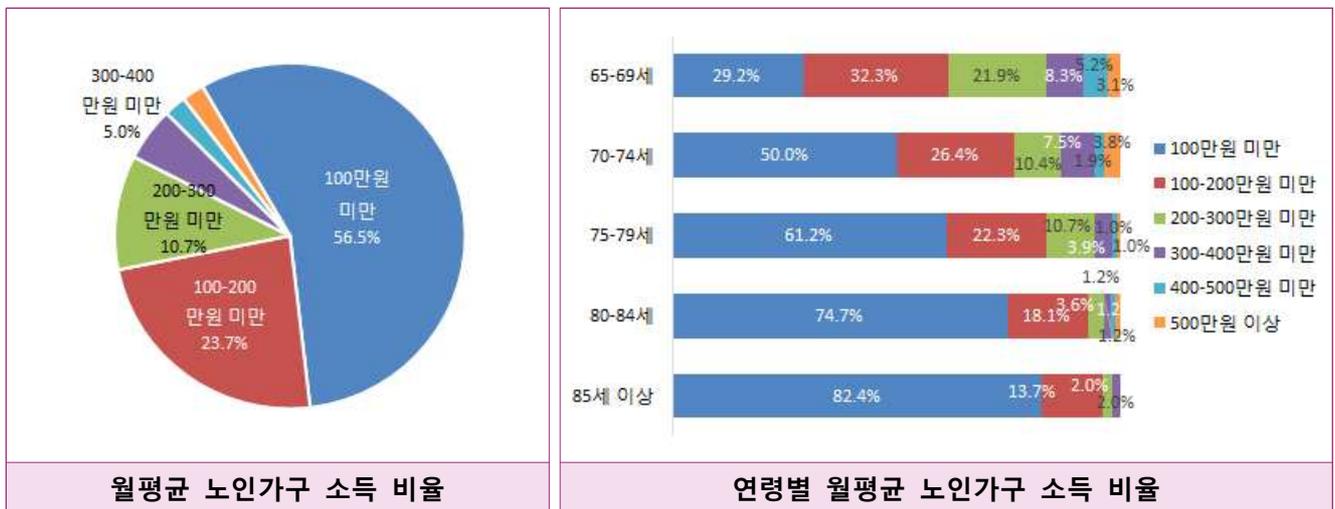
2. 경 제^{II}

2-1.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보령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6.5%로 가장 높음

- (월평균 소득 비율) 2019년 보령시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6.5%로 가장 많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짐
- (연령별)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2-1>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표 2-1> 월평균 노인가구 소득

(단위: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노인	100.0	56.5	23.7	10.7	5.0	2.1	2.1
65-69세	100.0	29.2	32.3	21.9	8.3	5.2	3.1
70-74세	100.0	50.0	26.4	10.4	7.5	1.9	3.8
75-79세	100.0	61.2	22.3	10.7	3.9	1.0	1.0
80-84세	100.0	74.7	18.1	3.6	1.2	1.2	1.2
85세 이상	100.0	82.4	13.7	2.0	2.0	0.0	0.0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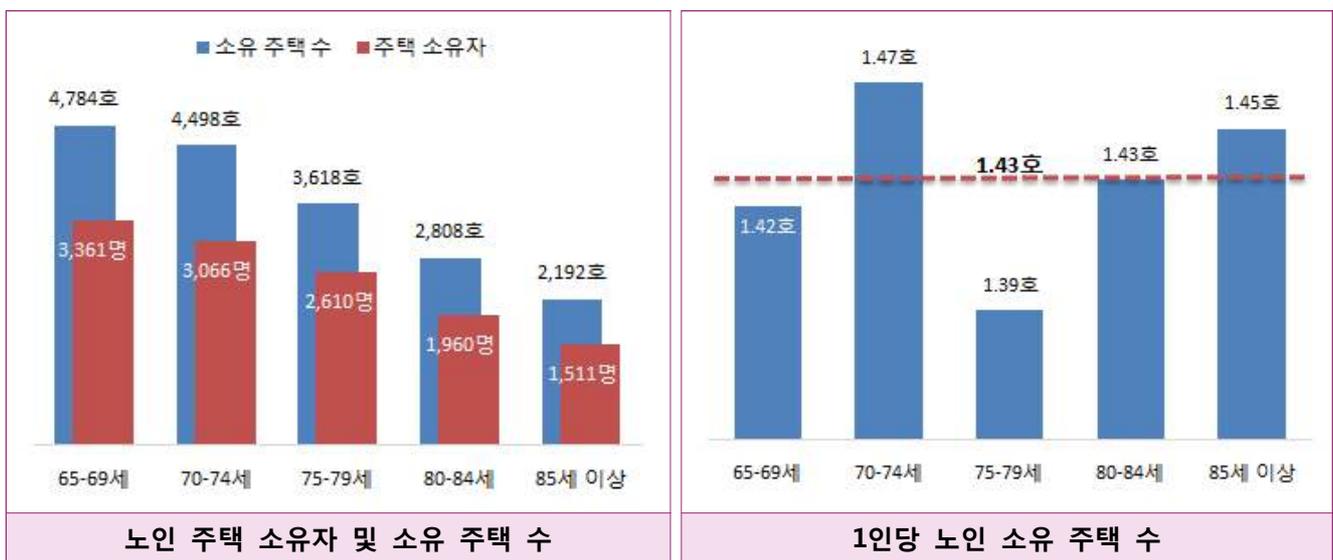
II.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6월 1일 기준 부과된 재산세 자료를 기초로 통계를 작성하였고, 2020년 사회조사는 표본조사가 노인인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2-2. 노인 주택 소유자¹⁾ 및 소유 주택 수²⁾

노인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주택 수는 「65-69세」가 가장 많고, 전체 노인의 1인당 소유 주택 수는 1.43호임

-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주택 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주택 수는 「65-69세」가 각각 3,361명과 4,784호로 가장 많음
- (1인당 소유 주택 수) 1인당 소유 주택 수는 「70-74세」가 1.47호로 가장 많으며, 「75-79세」가 1.39호로 가장 적음

<그림 2-2> 노인 소유 주택 수



<표 2-2> 노인 소유 주택 수

(단위: 명, 호, %)

구분	주택 소유자 (A)		소유 주택 수 (B)		1인당 소유 주택 수 (B/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2,508	100.0	17,900	100.0	1.43
65-69세	3,361	26.9	4,784	26.7	1.42
70-74세	3,066	24.5	4,498	25.1	1.47
75-79세	2,610	20.9	3,618	20.2	1.39
80-84세	1,960	15.7	2,808	15.7	1.43
85세 이상	1,511	12.1	2,192	12.2	1.45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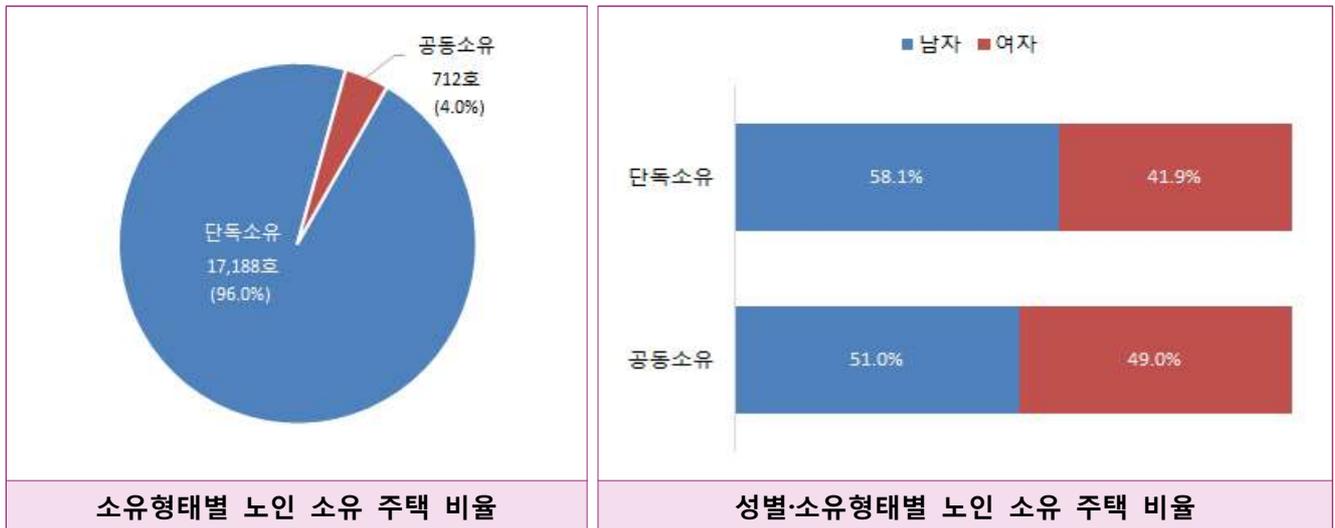
- 1)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 보령시 내 주택을 소유한 자를 나타냄
- 2) 소유 주택 수는 2020. 6. 1. 보령시 소재지 기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2-3.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주택 수

노인 주택 소유자 중 96.0%가 「단독소유」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소유 주택 비율이 높음

- (소유형태별)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96.0%(17,188호)가 「단독소유」이며, 「공동소유」는 4.0%(712호)에 불과함
- (성별) 남자의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는 각각 58.1%, 51.0%로 모두 여자보다 높음

<그림 2-3>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주택 수



<표 2-3-1>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주택 수

(단위: 호)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보령시 전체	41,506	37,271	4,235
노인	17,900	17,188	712

<표 2-3-2> 성별·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주택 수

(단위 :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주택 수	비율	주택 수	비율	주택 수	비율
노인	17,900	100.0	17,188	100.0	712	100.0
남자	10,342	57.8	9,979	58.1	363	51.0
여자	7,558	42.2	7,209	41.9	349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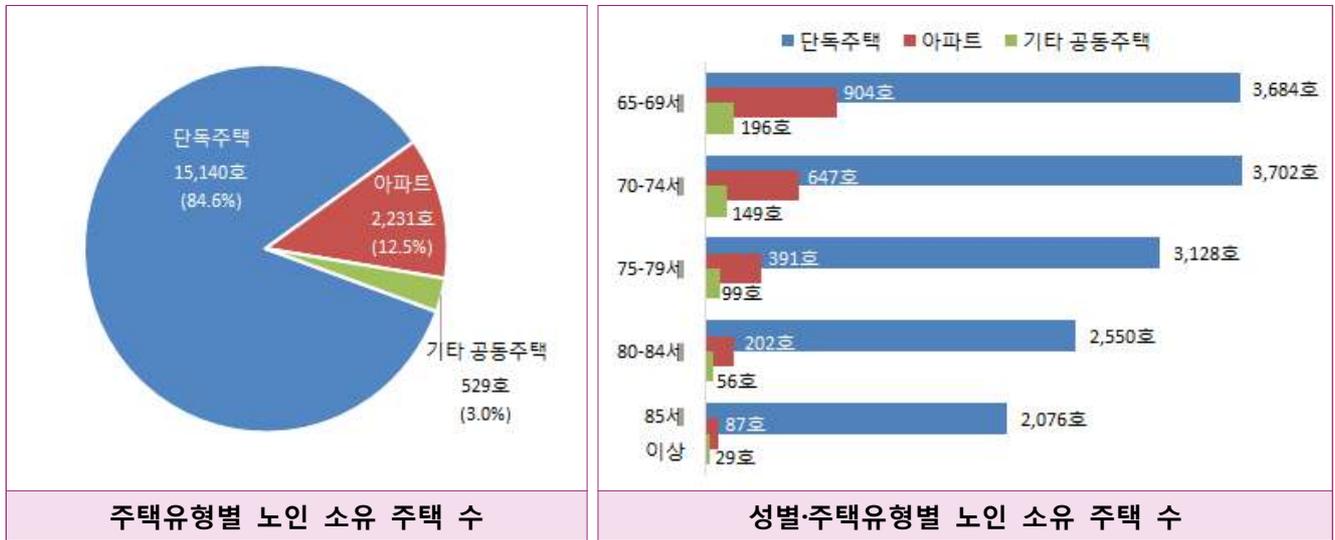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4. 주택유형별 노인 소유 주택 수

노인 소유 주택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84.6%로 가장 높음

- (주택유형별) 보령시 노인 소유 주택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84.6%(15,140호)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파트」로 12.5%(2,231호)
- (성별) 남자는 여자보다 「단독주택」 소유 비율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아파트」 소유 비율이 높음

<그림 2-4> 주택유형별 노인 소유 주택 수



<표 2-4> 주택유형별 노인 소유 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주택 ¹⁾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²⁾
노인	17,900	15,140	2,231	529
비율	100.0	84.6	12.5	3.0
65-69세	4,784	3,684	904	196
비율	100.0	77.0	18.9	4.1
70-74세	4,498	3,702	647	149
비율	100.0	82.3	14.4	3.3
75-79세	3,618	3,128	391	99
비율	100.0	86.5	10.8	2.7
80-84세	2,808	2,550	202	56
비율	100.0	90.8	7.2	2.0
85세 이상	2,192	2,076	87	29
비율	100.0	94.7	4.0	1.3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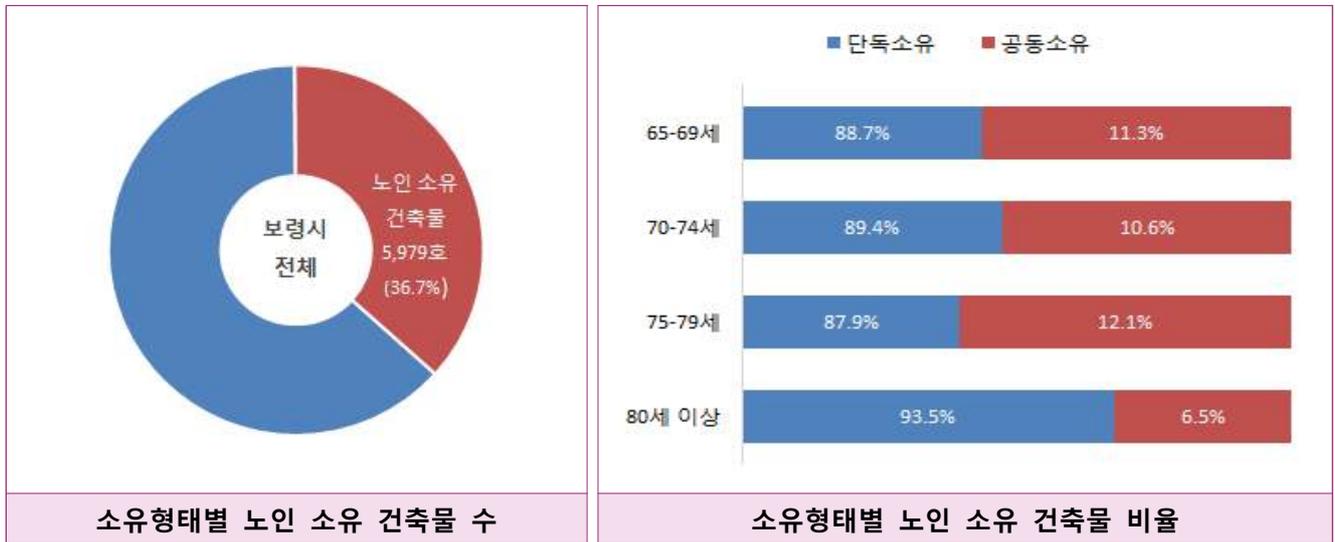
1) 단독주택 범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업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 포함(창고 제외)
 2) 기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5.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건축물 현황

노인 소유 건축물 수는 5,979호로 보령시 전체 건축물의 36.7%이며, 그 중 「단독소유」는 89.4%(5,343호)

- (소유형태별) 건축물을 소유한 노인의 89.4%(5,343호)가 「단독소유」이며 「공동소유」는 10.6%(636호)임
- (연령별) 「80세 이상」의 「단독소유」 비율이 93.5%로 가장 높음

<그림 2-5>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건축물 현황



<표 2-5> 소유형태별 노인 소유 건축물 현황

(단위: 호, %)

구분	소유 건축물 수 ¹⁾	단독소유	공동소유
보령시 전체	16,259	13,698	2,561
노인	5,979	5,343	636

(단위: 호, %)

구분	소유 건축물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노인	5,979	5,343	636
비율	100.0	89.4	10.6
65-69세	2,494	2,212	282
비율	100.0	88.7	11.3
70-74세	1,705	1,525	180
비율	100.0	89.4	10.6
75-79세	1,052	925	127
비율	100.0	87.9	12.1
80세 이상	728	681	47
비율	100.0	93.5	6.5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1) 소유 건축물 수는 2020. 6. 1. 보령시 소재지 기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건축물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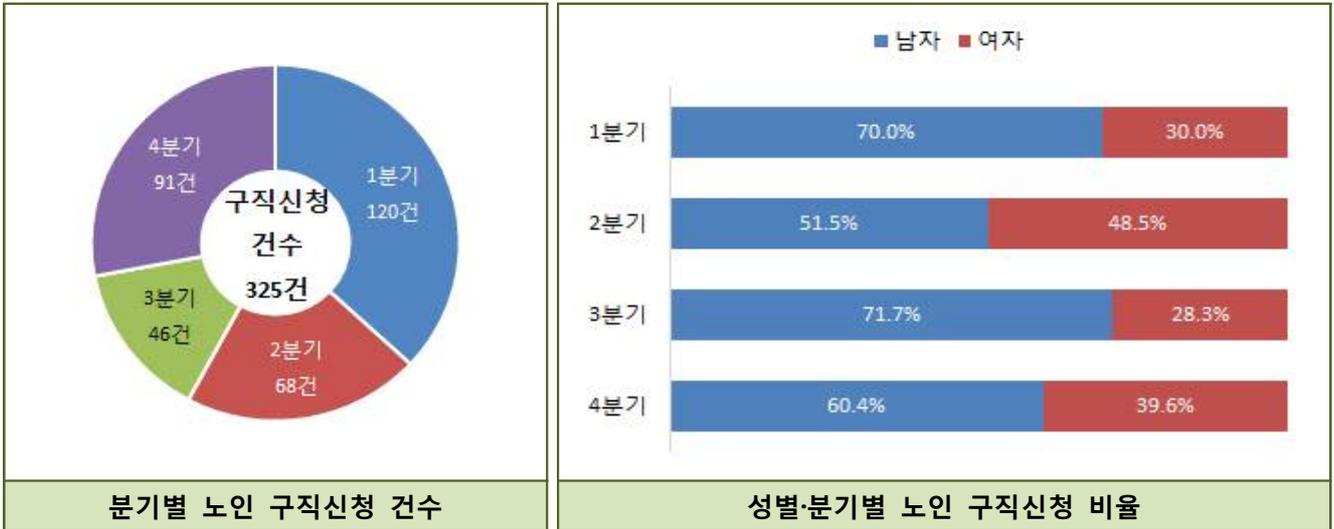
3. 일자리 · 연금^{III}

3-1. 노인 구직신청 건수

노인 구직신청 건수는 325건이고, 남자가 207건(63.7%)으로 더 많음

- (분기별) 보령시 노인 구직신청 건수는 325건이며, 1분기가 120건으로 가장 많고 3분기가 46건으로 가장 적음
- (성별) 남자는 1분기(70.0%)와 3분기(71.7%)에 높고, 여자는 2분기(48.5%)와 4분기(39.6%)에 높음

<그림 3-1> 노인 구직신청 건수



<표 3-1> 노인 구직신청 건수

(단위: 명, %)

구분	구직신청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노인	325	100.0	120	100.0	68	100.0	46	100.0	91	100.0
남자	207	63.7	84	70.0	35	51.5	33	71.7	55	60.4
여자	118	36.3	36	30.0	33	48.5	13	28.3	36	39.6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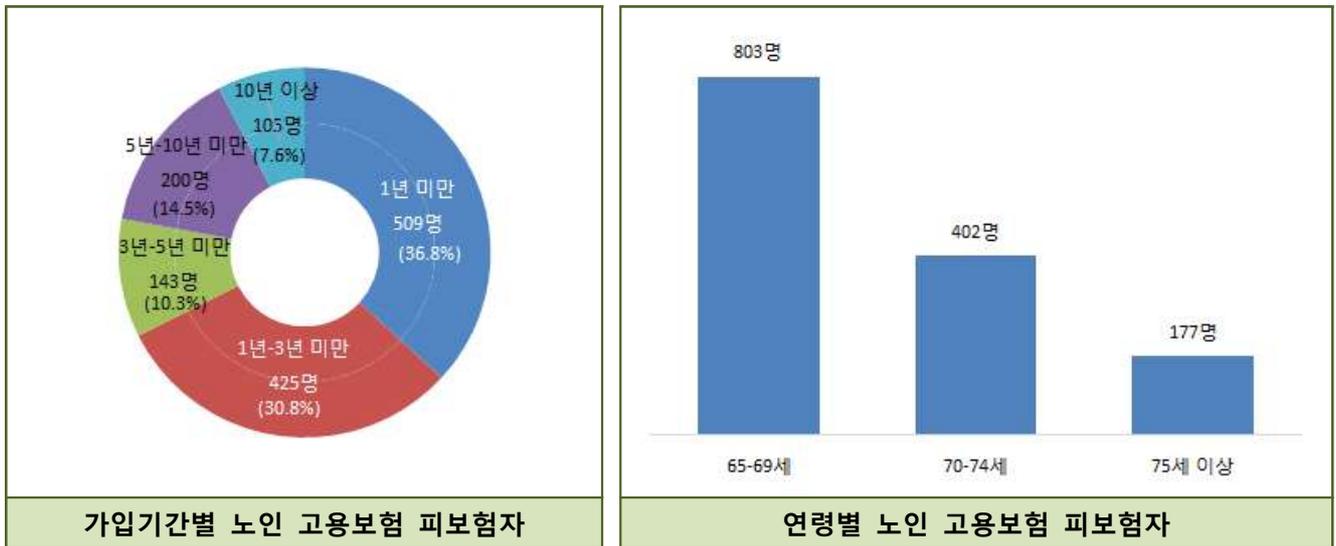
III.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구직신청 건수는 2019. 1. 1. - 12. 31. 구직신청서 작성한 건수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 12. 31. 보령시 소재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

3-2.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¹⁾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2명이며, 그 중 「65-69세」가 803명으로 가장 많음

- (가입기간별²⁾) 보령시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2명이며, 「1년 미만」이 509명(36.8%)으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은 105명(7.6%)으로 가장 적음
- (연령별) 「65-69세」가 803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줄어듦

<그림 3-2>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표 3-2> 노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노인	1,382	509	425	143	200	105
비율	100.0	36.8	30.8	10.3	14.5	7.6
65-69세	803	282	257	84	120	60
비율	100.0	35.1	32.0	10.5	14.9	7.5
70-74세	402	151	120	45	57	29
비율	100.0	37.6	29.9	11.2	14.2	7.2
75세 이상	177	76	48	14	23	16
비율	100.0	42.9	27.1	7.9	13.0	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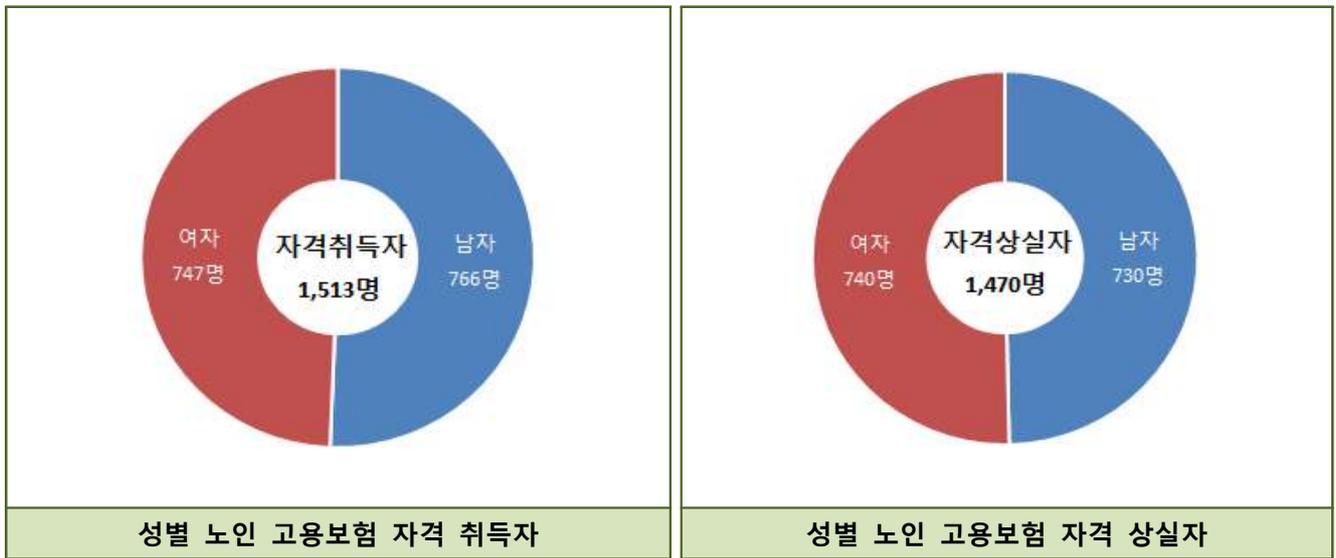
1)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 12. 31. 기준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전체 피보험자수로, 중복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최근 취득 사업장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함
 2) 가입기간은 최근 취득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나타냄

3-3.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¹⁾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남자가 많고, 「자격 상실자」는 여자가 많음

- (자격 취득자) 보령시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1,513명이고, 그 중 남자가 766명(50.6%)으로 여자보다 더 많음
- (자격 상실자) 보령시 노인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1,470명이고, 그 중 여자가 740명(50.3%)으로 남자보다 더 많음

<그림 3-3>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표 3-3> 노인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단위: 명, %)

구 분	자격 취득자		자격 상실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인	1,513	100.0	1,470	100.0
남자	766	50.6	730	49.7
여자	747	49.4	740	50.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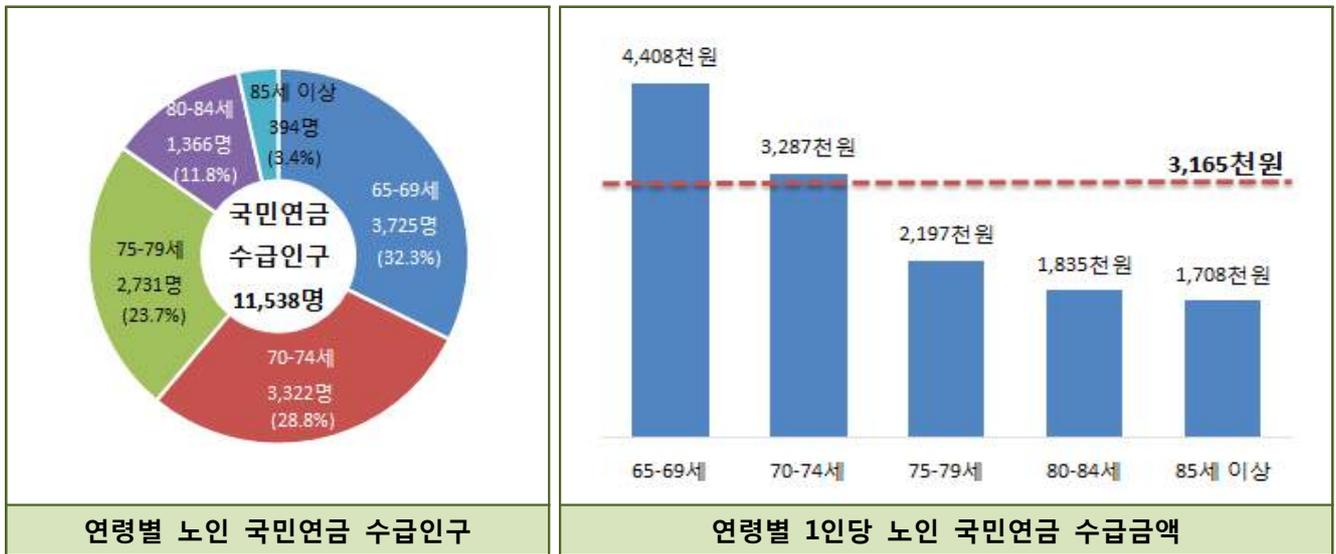
1) 자격취득(상실)자는 최근 취득(상실) 사업장 기준으로 2019. 1. 1. ~ 12. 31. 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를 나타냄

3-4. 노인 국민연금¹⁾ 수급규모

노인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11,538명이고,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3,165천원

- (수급인구) 보령시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인구는 11,538명이고, 그 중 「65-69세」가 3,725명(32.3%)으로 가장 많음
- (수급금액) 노인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3,165천원이며, 「65-69세」가 4,408천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3-4>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표 3-4>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수급인구 (A)	수급금액 (B)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 (B/A)
노인	11,538	36,518,033	3,165
65-69세	3,725	16,420,983	4,408
70-74세	3,322	10,918,230	3,287
75-79세	2,731	5,999,685	2,197
80-84세	1,366	2,506,219	1,835
85세 이상	394	672,916	1,70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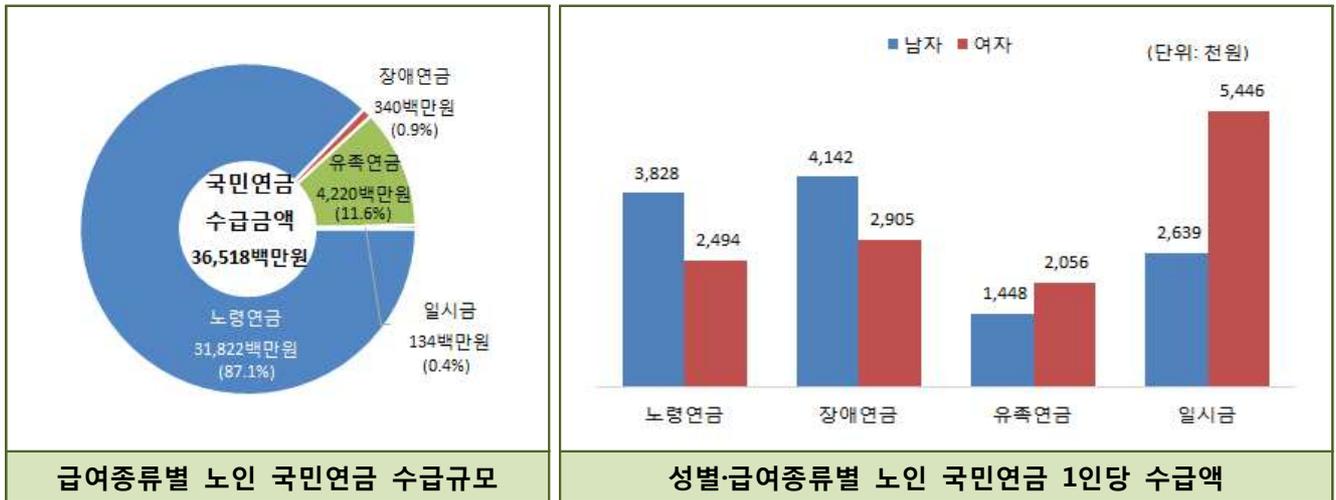
1) 2020. 4. 30. 기준 보령시 거주 인구가 2019. 12. 31.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경우 산정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8세-59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신청하여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음.

3-5.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노인 국민연금 수급금액 중 「노령연금」이 31,822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연금 수급금액 중 「노령연금」이 31,822백만원(87.1%)으로 가장 많고, 「일시금」이 134백만원(0.4%)으로 가장 적음
- (성별) 노인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 중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남자가 각각 3,828천원, 4,142천원으로 여자보다 많음

<그림 3-5>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표 3-5>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천원, 명)

구분	연금			일시금 ¹⁾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인	31,822,215	340,144	4,220,698	134,975
수급인원	9,321	86	2,099	32
1인당 수급액	3,414	3,955	2,011	4,218
남자	24,606,379	302,376	225,873	36,949
수급인원	6,428	73	156	14
1인당 수급액	3,828	4,142	1,448	2,639
여자	7,215,836	37,768	3,994,825	98,026
수급인원	2,893	13	1,943	18
1인당 수급액	2,494	2,905	2,056	5,44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1)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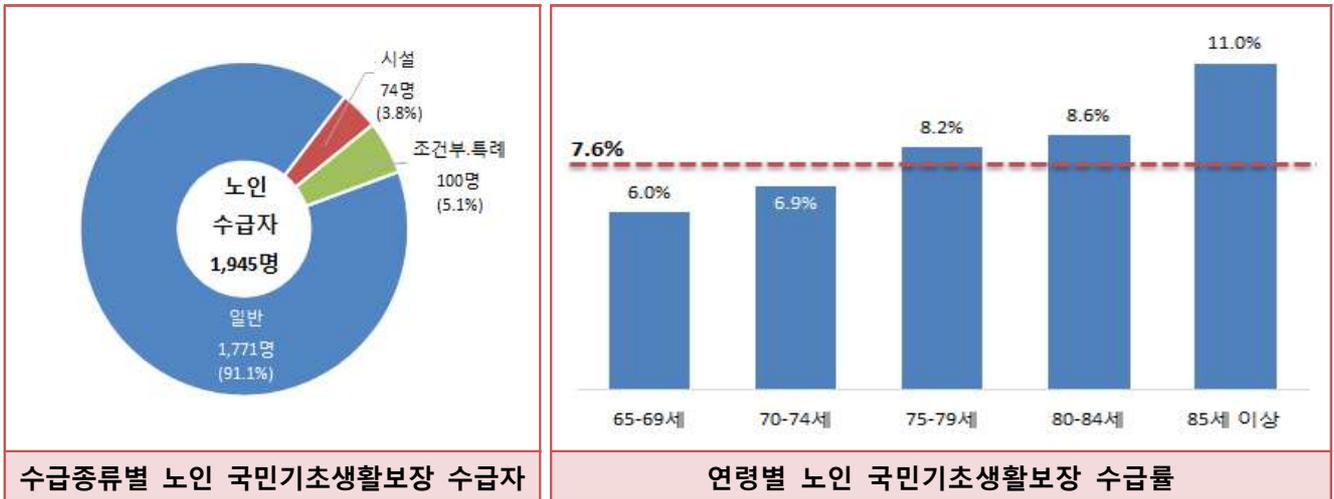
4. 복지^{IV}

4-1.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945명으로 전체 노인의 7.6%를 차지

- (수급종류별) 보령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945명이며, 그 중 「일반 수급자」는 1,771명(91.1%)이고 「시설수급자」는 74명(3.8%)임
- (연령별) 보령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7.6%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증가함

<그림 4-1>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표 4-1>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일반		시설 ¹⁾		조건부·특례		수급률 ²⁾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노인	1,945	100.0	1,771	100.0	74	100.0	100	100.0	7.6
65-69세	435	22.4	411	23.2	*	*	20	20.0	6.0
70-74세	410	21.1	374	21.1	*	*	32	32.0	6.9
75-79세	416	21.4	381	21.5	16	21.6	19	19.0	8.2
80-84세	351	18.0	315	17.8	20	27.0	16	16.0	8.6
85세 이상	333	17.1	290	16.4	30	40.5	13	13.0	11.0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IV.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2019.4.30. 기준이며, 각 급여별 중복과 관계없이 수급자 기준, 장애인 등록인구는 2019. 4. 30. 기준으로 집계

1) '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를 나타내며, 이외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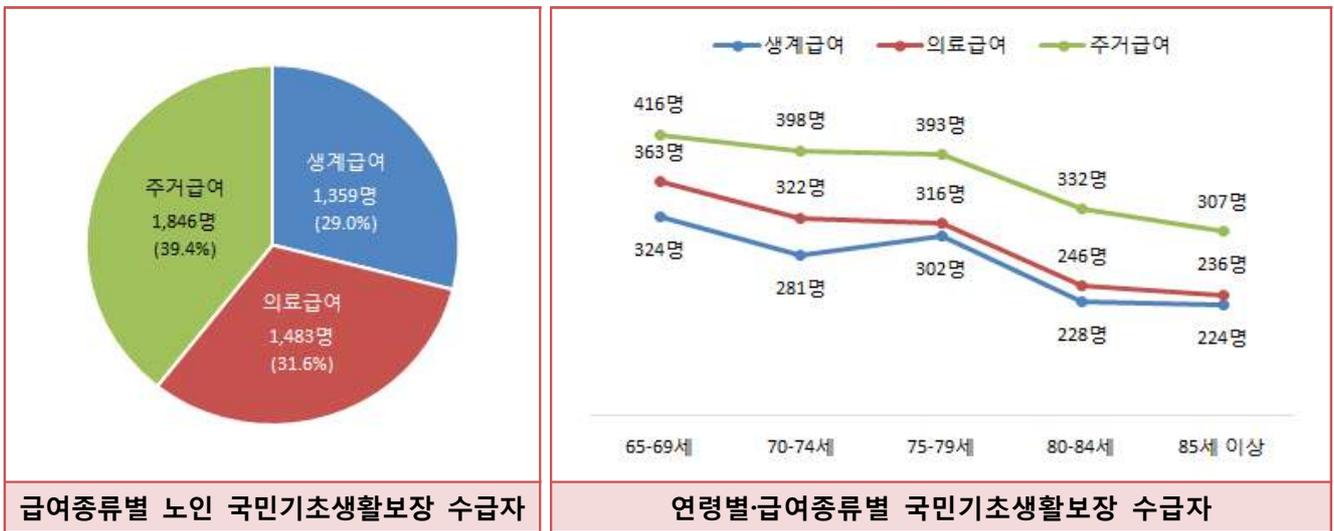
2) 수급률(%) = 수급인구/인구 수 x 100

4-2.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중 「주거급여」가 1,846명(3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급여」 1,483명(31.6%), 「생계급여」 1,359명(29.0%)순임

-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중 「주거급여」가 1,846명(3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급여」 1,483명(31.6%), 「생계급여」 1,359명(29.0%)순임
- (연령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65-69세」에서 가장 수급인원이 많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4-2>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표 4-2> 급여종류별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인원	비율	수급인원	비율	수급인원	비율	수급인원	비율
노인	1,945	100.0	1,359	100.0	1,483	100.0	1,846	100.0
65-69세	435	22.4	324	23.8	363	24.5	416	22.5
70-74세	410	21.1	281	20.7	322	21.7	398	21.6
75-79세	416	21.4	302	22.2	316	21.3	393	21.3
80-84세	351	18.0	228	16.8	246	16.6	332	18.0
85세 이상	333	17.1	224	16.5	236	15.9	307	16.6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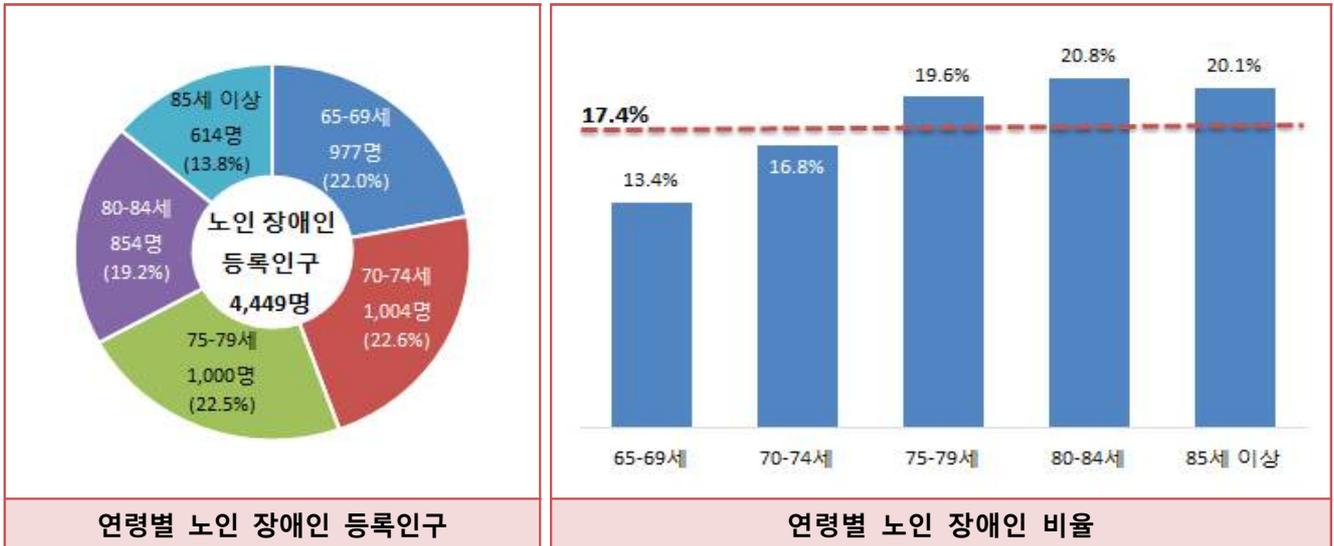
1) 수급인구 전체는 급여별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수치임

4-3.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¹⁾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4,449명으로, 전체 노인의 17.4%를 차지

- (장애인 등록 인구) 보령시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4,449명이며, 「40-47세」가 1,004명(22.6%)으로 가장 많고 「85세 이상」이 614명(13.8%)으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등록 비율)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은 17.4%이며, 「85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임

<그림 4-3>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표 4-3>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인 비율 ²⁾	
		비율	비율
노인	4,449	100.0	17.4
65-69세	977	22.0	13.4
70-74세	1,004	22.6	16.8
75-79세	1,000	22.5	19.6
80-84세	854	19.2	20.8
85세 이상	614	13.8	20.1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1) 2020.4.30 기준 주소지가 보령시인 장애인 등록인구(외국인 제외)

2) 장애인 비율(%)=장애인 등록인구/인구 수x100

4-4. 장애유형¹⁾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외부기관의 장애」가 4,189명(94.2%)으로 가장 많음

- (장애유형별) 보령시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외부기관의 장애」가 4,189명(94.2%)으로 가장 많고, 「정신적 장애」는 78명(1.8%)으로 가장 적음
- (성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중 「외부기관의 장애」는 여자가 95.6%로 남자의 93.0%보다 높고, 「내부기관의 장애」는 남자가 5.1%로 여자의 2.9%보다 높음

<그림 4-4>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표 4-4>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보령시 전체	8,219	6,692	381	1,146
비율	100.0	81.4	4.6	13.9
남자	5,046	4,081	255	710
비율	100.0	80.9	5.1	14.1
여자	3,173	2,611	126	436
비율	100.0	82.3	4.0	13.7
노인	4,449	4,189	182	78
비율	100.0	94.2	4.1	1.8
남자	2,403	2,234	123	46
비율	100.0	93.0	5.1	1.9
여자	2,046	1,955	59	32
비율	100.0	95.6	2.9	1.6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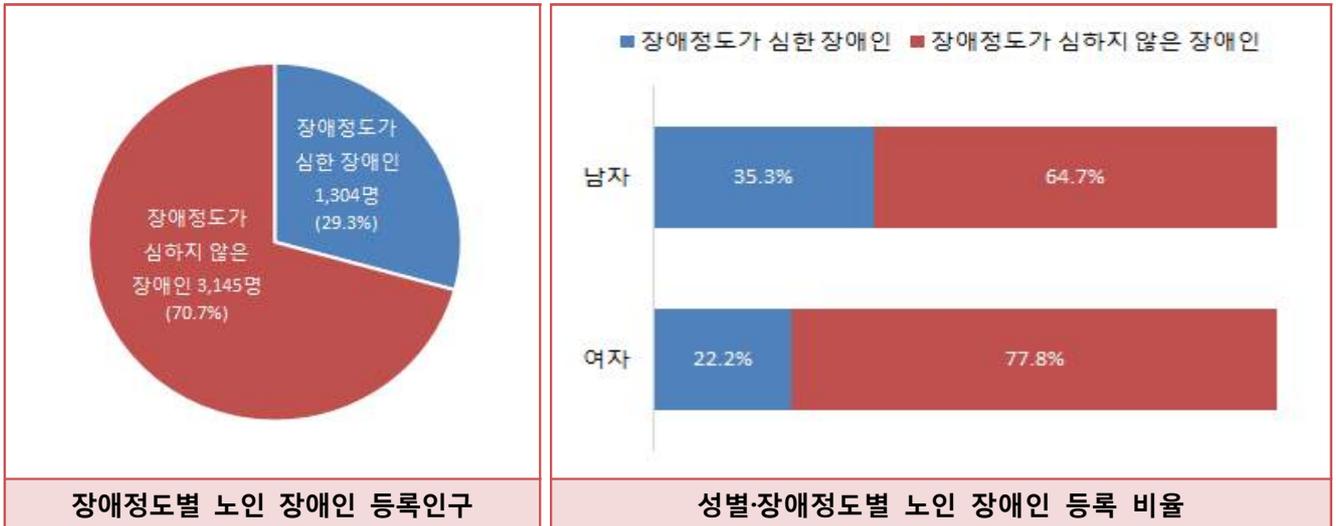
1)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관의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나뉜다.

4-5.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29.3%

- (장애정도별) 보령시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145명(70.7%)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304명(29.3%)보다 많음
- (성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중 남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35.3%로 여자의 22.2%보다 높음

<그림 4-5>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표 4-5>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보령시 전체	8,219	3,230	4,989
비율	100.0	39.3	60.7
남자	5,046	2,146	2,900
비율	100.0	42.5	57.5
여자	3,173	1,084	2,089
비율	100.0	34.2	65.8
노인	4,449	1,304	3,145
비율	100.0	29.3	70.7
남자	2,403	849	1,554
비율	100.0	35.3	64.7
여자	2,046	455	1,591
비율	100.0	22.2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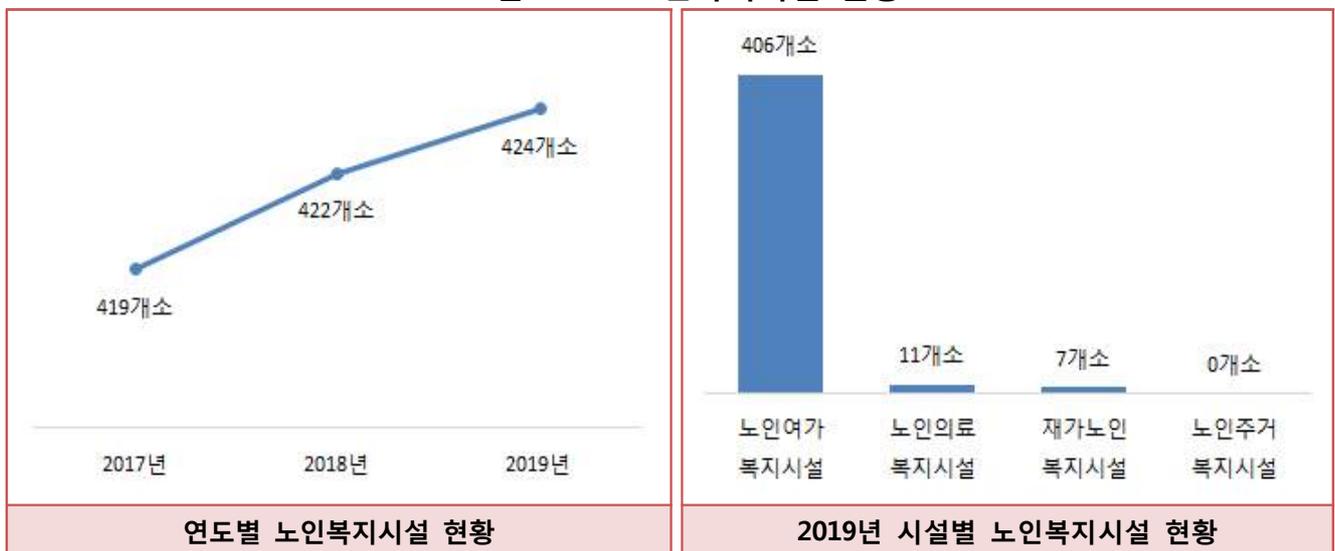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6. 노인복지시설¹⁾ 현황

노인복지시설은 424개소이며, 그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406개소(95.8%)로 가장 많음

- (연도별) 보령시 노인복지시설은 2017년 419개소에서 2019년 424개소로 5개소가 증가함
- (시설별)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406개소(95.8%)로 가장 많고,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0개소로 가장 적음

<그림 4-6>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 4-6>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시설 수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2019년	424	-	11	406	7
비율	100.0	-	2.6	95.8	1.7
2018년	422	-	12	403	7
비율	100.0	-	2.8	95.5	1.7
2017년	419	-	12	399	8
비율	100.0	-	2.9	95.2	1.9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7-2019), 각 연도 12월 말 기준

1)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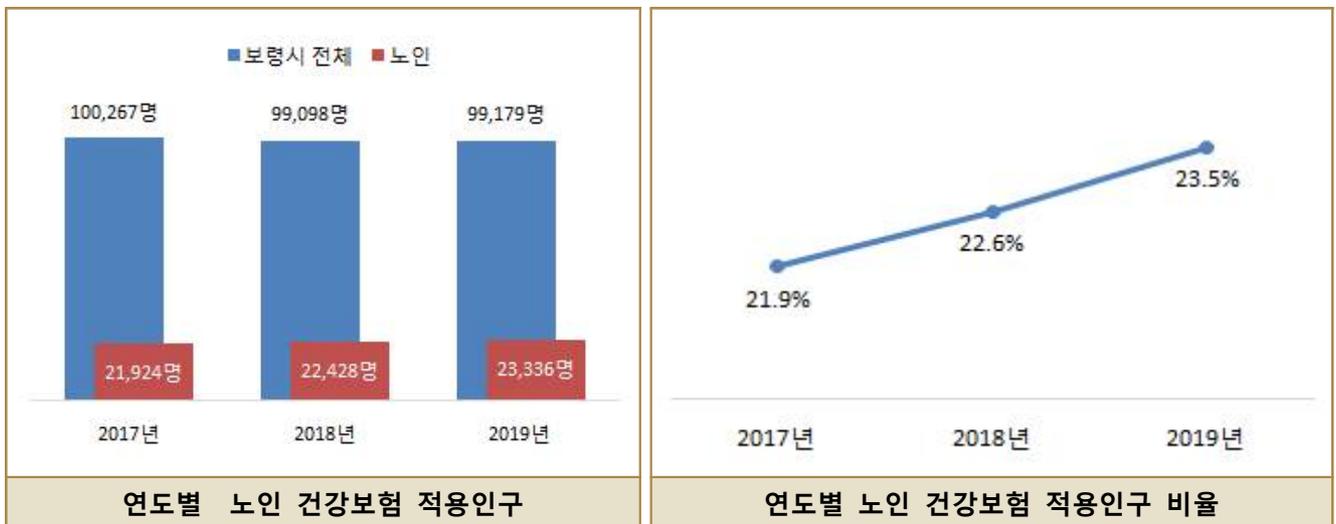
5. 건강^V

5-1.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령시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3,336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23.5%를 차지

-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령시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7년 21,924명에서 2019년 23,336명으로 증가함
- (적용인구 노인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체대비 노인 비율은 2017년 21.9%에서 2019년 23.5%로 증가함

<그림 5-1>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표 5-1>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보령시 전체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대비 노인비율 (B/A×100)
	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A)	비율	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B)	비율	
2019년	100,646	99,179	98.5	25,545	23,336	91.4	23.5
2018년	101,549	99,098	97.6	24,431	22,428	91.8	22.6
2017년	102,716	100,267	97.6	23,836	21,924	92.0	2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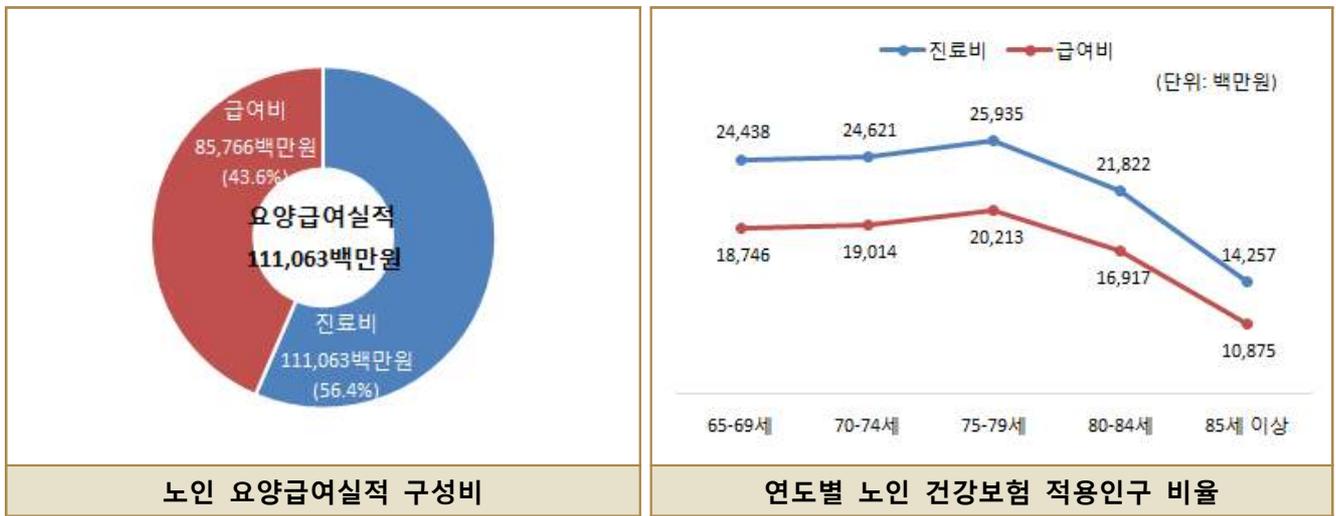
1) 2019. 12. 31.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의료급여는 제외

5-2. 노인 요양급여실적

보령시 노인 요양급여실적은 「진료비」 111,063백만원(56.4%), 「급여비」 85,766백만원(43.6%)으로 진료비가 더 많음

- (요양급여실적) 보령시 노인 요양급여실적은 「진료비」 111,063백만원(56.4%), 「급여비」 85,766백만원(43.6%)으로 총액 111,063백만원임
- (연령별) 보령시 노인 요양급여실적은 「진료비», 「급여비」 모두 「75-79세」에서 각각 25,935백만원, 20,213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5-2> 노인 요양급여실적



<표 5-2> 노인 요양급여실적

(단위: 천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			
	입원	외래	약국	비율	입원	외래	약국	비율
노인	111,063,176	48,970,417	38,639,997	23,452,762	85,765,860	39,523,490	29,201,700	17,040,670
비율	100.0	44.1	34.8	21.1	100.0	46.1	34.0	19.9
65-69세	24,437,532	8,173,825	10,451,204	5,812,503	18,746,323	6,769,980	7,761,666	4,214,677
비율	100.0	33.4	42.8	23.8	100.0	36.1	41.4	22.5
70-74세	24,621,462	9,398,707	9,669,435	5,553,320	19,014,369	7,697,903	7,270,388	4,046,078
비율	100.0	38.2	39.3	22.6	100.0	40.5	38.2	21.3
75-79세	25,934,553	11,317,101	9,352,456	5,264,995	20,213,189	9,204,163	7,182,652	3,826,373
비율	100.0	43.6	36.1	20.3	100.0	45.5	35.5	18.9
80-84세	21,821,669	11,147,162	6,246,501	4,428,006	16,916,584	8,920,672	4,770,564	3,225,348
비율	100.0	51.1	28.6	20.3	100.0	52.7	28.2	19.1
85세 이상	14,247,961	8,933,623	2,920,400	2,393,938	10,875,395	6,930,771	2,216,430	1,728,194
비율	100.0	62.7	20.5	16.8	100.0	63.7	20.4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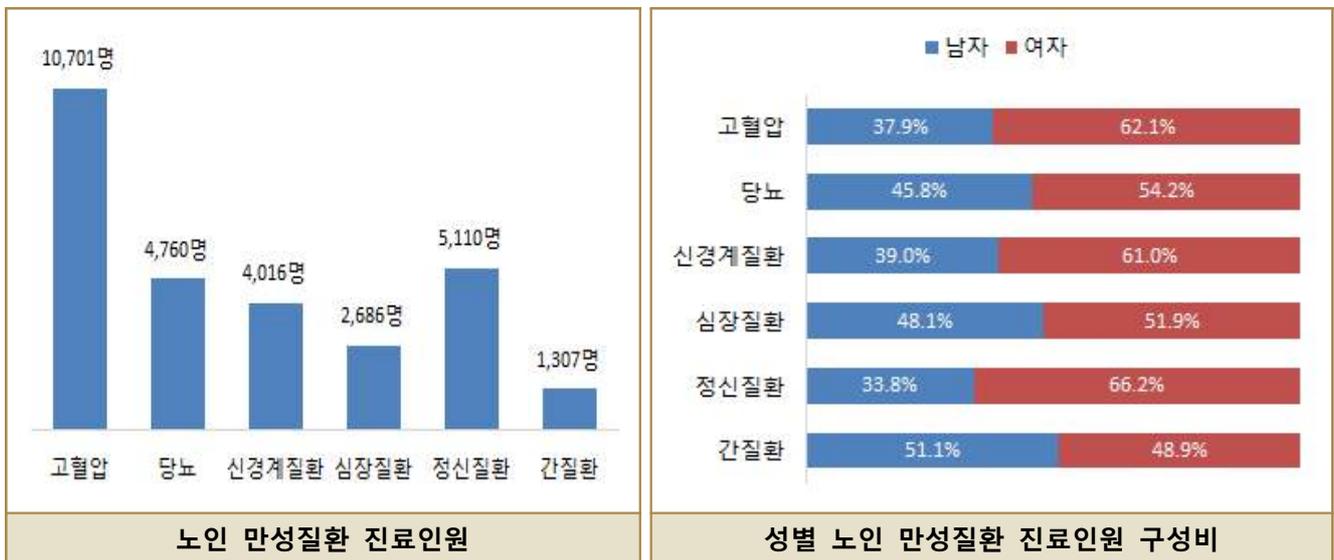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3.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¹⁾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고혈압」이 가장 많으며, 「간질환」을 제외한 질환은 모두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음

- (진료인원) 보령시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고혈압」이 10,701명으로 가장 많음
- (성별) 「간질환」을 제외하면 진료인원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으며, 「정신질환」이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5-3>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



<표 5-3> 노인 만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노인		
	노인	남자	여자
고혈압	10,701	4,061	6,640
비율	100.0	37.9	62.1
당뇨	4,760	2,178	2,582
비율	100.0	45.8	54.2
신경계질환	4,016	1,565	2,451
비율	100.0	39.0	61.0
심장질환	2,686	1,292	1,394
비율	100.0	48.1	51.9
정신질환	5,110	1,729	3,381
비율	100.0	33.8	66.2
간질환	1,307	668	639
비율	100.0	51.1	4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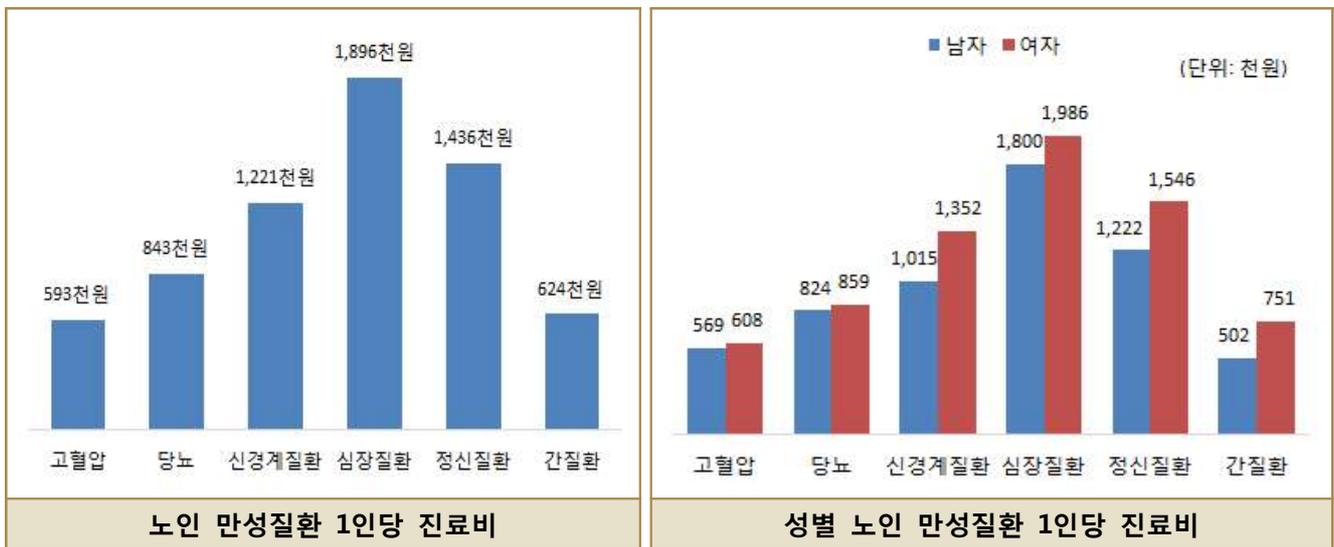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정신질환(F00~F99, G40~G41), 간질환(B18~B19, K70~K77)

5-4. 노인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¹⁾

노인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는 「정신질환」이 1,896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간질환」이 624천원으로 가장 적음

- (진료비) 보령시 노인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는 「심장질환」이 1,896천원으로 가장 많음
- (성별) 모든 만성질환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많으며, 「심장질환」 1인당 진료비가 1,986천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5-4> 노인 만성질환 1인당 진료비



<표 5-4> 노인 만성질환 진료비

(단위: 천원,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노인	6,346,940	4,010,546	4,903,114	5,092,925	7,339,927	815,282
진료인원	10,701	4,760	4,016	2,686	5,110	1,307
1인당 진료비	593	843	1,221	1,896	1,436	624
남자	2,312,563	1,793,682	1,589,051	2,324,955	2,112,800	335,285
진료인원	4,061	2,178	1,565	1,292	1,729	668
1인당 진료비	569	824	1,015	1,800	1,222	502
여자	4,034,377	2,216,864	3,314,063	2,767,970	5,227,127	479,997
진료인원	6,640	2,582	2,451	1,394	3,381	639
1인당 진료비	608	859	1,352	1,986	1,546	75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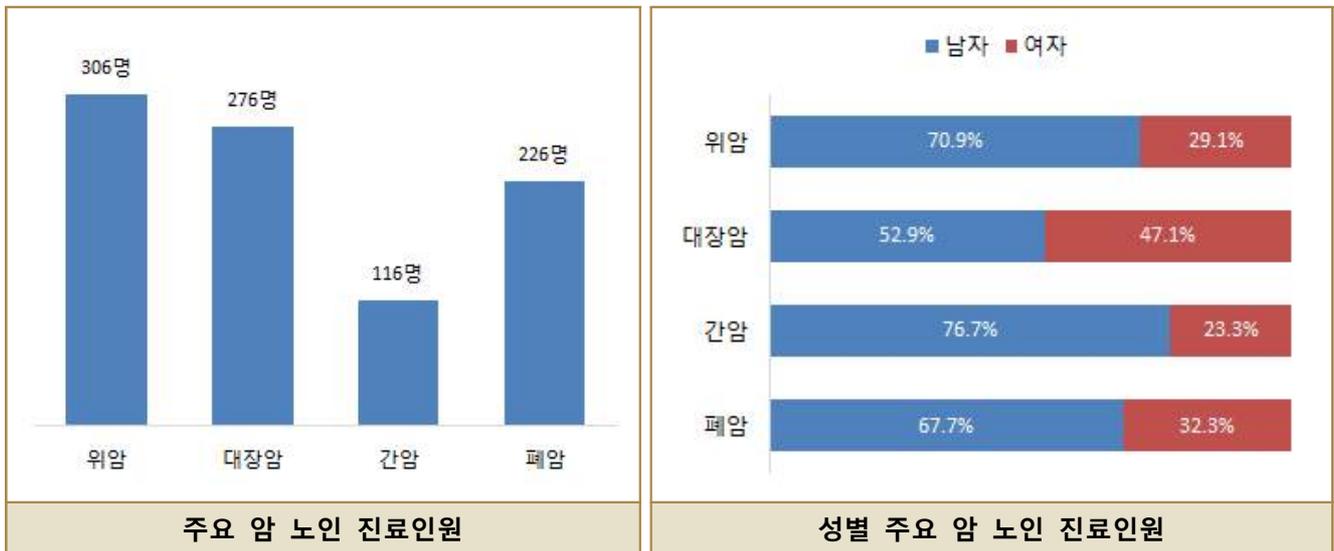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진료비는 약국포함,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2020년 6월 청구분 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정신질환(F00-F99, G40-G41), 간질환(B18-B19, K70-K77)

5-5. 노인 주요 암 진료인원¹⁾

노인 주요 암 진료인원은 「위암」이 306명으로 가장 많으며, 주요 암 모두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더 높음

- (진료인원) 보령시 노인 주요 암 진료인원은 「위암」이 30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장암」 276명, 「폐암」 226명순임
- (성별) 남자 진료인원의 비율이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모두 여자보다 높음

<그림 5-5> 주요 암 노인 진료인원



<표 5-5> 주요 암 노인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진료인원	비율	진료인원	비율	진료인원	비율	진료인원	비율
노인	306	100.0	276	100.0	116	100.0	226	100.0
남자	217	70.9	146	52.9	89	76.7	153	67.7
여자	89	29.1	130	47.1	27	23.3	73	3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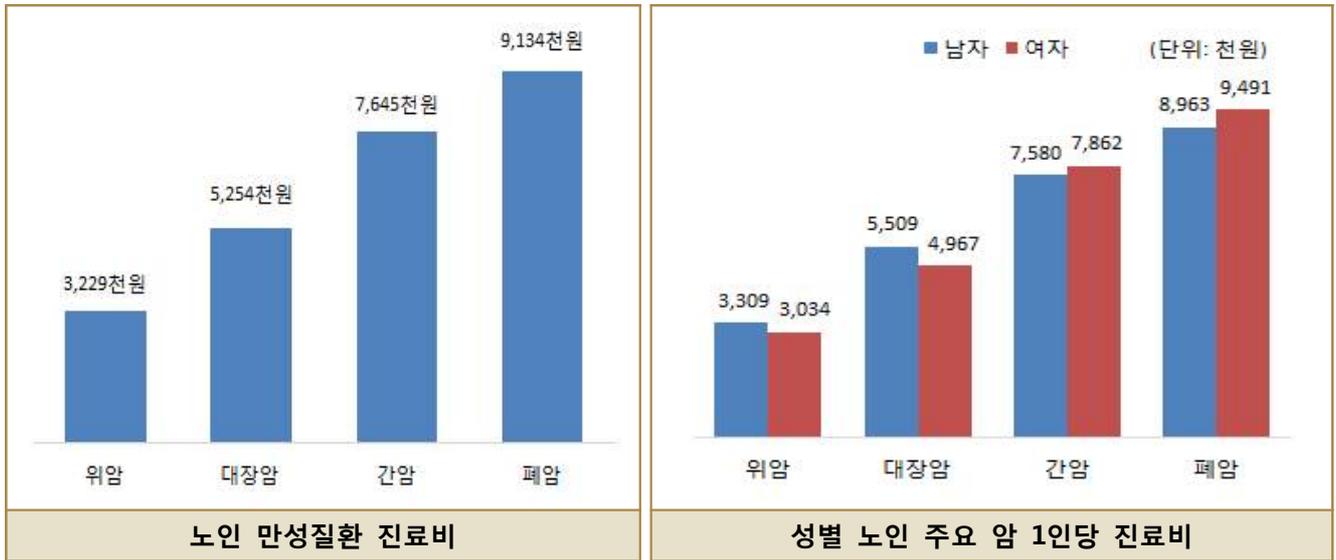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5-6.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¹⁾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는 「폐암」이 9,134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위암」이 3,229천원으로 가장 적음

- (진료비) 보령시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는 「폐암」이 7,340천원으로 가장 많음
- (성별) 「간암», 「폐암」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많으며, 「폐암」 1인당 진료비가 9,491천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5-6>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표 5-6> 노인 주요 암 1인당 진료비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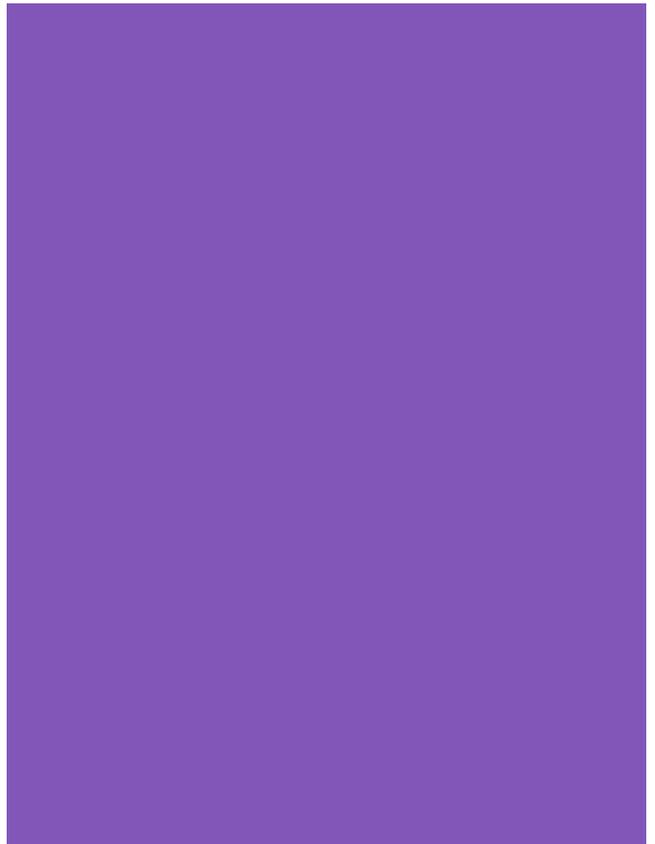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노인	988,011	1,450,070	886,869	2,064,211
진료인원	306	276	116	226
1인당 진료비	3,229	5,254	7,645	9,134
남자	718,022	804,352	674,603	1,371,371
진료인원	217	146	89	153
1인당 진료비	3,309	5,509	7,580	8,963
여자	269,989	645,718	212,266	692,840
진료인원	89	130	27	73
1인당 진료비	3,034	4,967	7,862	9,49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진료비는 약국포함,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2020년 6월 청구분 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III

통계표



통계표 목차

1. 인구·가구	42
1-1. 노인인구 규모	42
1-1-1. 연령별 성별 노인인구	42
1-1-2. 읍·면·동별 노인인구	43
1-1-3. 읍·면·동별 연령별 노인인구	44
<참고>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45
1-2. 전입인구	45
1-2-1. 성별 전입인구	46
1-2-2. 연령별 전입인구	46
1-3.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	46
1-3-1.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외)	46
1-3-2.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내)	47
1-4. 전출인구	47
1-4-1. 성별 전출인구	48
1-4-2. 연령별 전출인구	48
1-5.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48
1-5-1. 연령별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49
1-6. 유형별 노인가구	49
1-6-1. 연령별 유형별 노인가구	50
1-7. 사망률	50
1-7-1. 성별 사망률	50
1-7-2. 연령별 사망률	50
 2. 경 제	 51
2-1. 월평균 가구 소득	51

2-1-1. 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51
2-1-2. 연령별 월평균 가구 소득	51
2-1-3. 학력별 월평균 가구 소득	52
2-2. 소유 주택 수	52
2-2-1. 성별 소유 주택 수	52
2-2-2. 연령별 소유 주택 수	53
2-3.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53
2-3-1. 성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54
2-3-2. 연령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54
2-3-3. 읍·면·동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55
2-4.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56
2-4-1. 성별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56
2-4-2. 연령별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56
2-5.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57
2-5-1. 성별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57
2-5-2. 연령별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57
3. 일자리·연금	58
3-1. 분기별 구직신청 건수	58
3-1-1. 성별 분기별 구직신청 건수	58
3-2.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58
3-2-1. 성별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58
3-3. 고용보험 피보험자	59
3-3-1.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59
3-3-2.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59
3-4.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59
3-4-1. 성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60
3-4-2. 연령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60

3-5.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60
3-5-1. 성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61
3-5-2. 연령별 성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61
3-6. 국민연금 가입규모	61
3-7. 국민연금 수급규모	62
3-7-1. 성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62
3-7-2.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62
3-8.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63
3-8-1.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63
3-8-2.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64
4. 복 지	65
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
4-1-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
4-1-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
4-2.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6
4-2-1.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6
4-2-2.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6
4-2-3. 읍·면·동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7
4-3. 장애인 등록인구	67
4-3-1. 성별 장애인 등록인구	67
4-3-2. 연령별 장애인 등록인구	68
4-3-3.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인구	68
4-4.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69
4-4-1. 성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69
4-4-2.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69
4-4-3. 읍·면·동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70
4-5.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71

4-5-1.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71
4-5-2.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71
4-5-3. 읍·면·동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72
4-6. 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73
4-7. 노인복지시설 현황	73
5. 건 강	74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74
5-1-1. 성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74
5-1-2.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74
5-2. 영양급여실적	75
5-2-1. 성별 영양급여실적	75
5-2-2. 연령별 영양급여실적	76
5-3. 만성질환 진료인원	76
5-3-1. 성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77
5-3-2.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77
5-4. 만성질환 진료비	78
5-4-1. 성별 만성질환 진료비	78
5-4-2.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비	79
5-5. 주요 암 진료인원	79
5-5-1. 성별 주요 암 진료인원	79
5-5-2. 연령별 주요 암 진료인원	80
5-6. 주요 암 진료비	80
5-6-1. 성별 주요 암 진료비	81
5-6-2. 연령별 주요 암 진료비	81

보령시 노인통계 통계표

1. 인구·가구^I

1-1. 노인인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보령시		
	노인 (A)	인구 (B)	노인 비율 (A/B×100)	노인 (C)	인구 (D)	노인 비율 (C/D×100)	노인 (E)	인구 (F)	노인 비율 (E/F×100)
2020년	8,229,428	51,842,524	15.9	394,476	2,118,457	18.6	25,545	100,646	25.4
2019년	7,773,471	51,836,763	15.0	377,081	2,125,912	17.7	24,431	101,549	24.1
2018년	7,464,608	51,790,131	14.4	366,483	2,120,666	17.3	23,836	102,716	23.2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별 4월 기준 자료

1-1-1. 연령별 성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인구		남자 (A)		여자 (B)		성비 ¹⁾ (A/B×10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노인	25,545	100.0	10,825	100.0	14,720	100.0	73.5
65-69세	7,305	28.6	3,498	32.3	3,807	25.9	91.9
70-74세	5,984	23.4	2,798	25.8	3,186	21.6	87.8
75-79세	5,097	20.0	2,137	19.7	2,960	20.1	72.2
80-84세	4,111	16.1	1,529	14.1	2,582	17.5	59.2
85세 이상	3,048	11.9	863	8.0	2,185	14.8	39.5

자료: 보령시 「주민등록인구자료」

I.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4월 30일 기준 보령시 거주자 산정 (외국인 제외)

1)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 남성 인구/여성 인구×100

1-1-2. 읍·면·동 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A)		노인인구 (B)		노인인구 비율 (B/Ax100)
		비율		비율	
보령시	100,646	100.0	25,545	100.0	25.4
웅천읍	6,382	6.3	2,402	9.4	37.6
주포면	1,633	1.6	570	2.2	34.9
주교면	5,381	5.3	1,624	6.4	30.2
오천면	5,011	5.0	1,732	6.8	34.6
천북면	3,632	3.6	1,410	5.5	38.8
청소면	2,672	2.7	1,234	4.8	46.2
청라면	3,966	3.9	1,569	6.1	39.6
남포면	5,177	5.1	1,965	7.7	38.0
주산면	2,483	2.5	1,220	4.8	49.1
미산면	1,787	1.8	836	3.3	46.8
성주면	2,314	2.3	771	3.0	33.3
대천1동	14,763	14.7	2,699	10.6	18.3
대천2동	7,026	7.0	1,441	5.6	20.5
대천3동	16,797	16.7	1,991	7.8	11.9
대천4동	15,029	14.9	2,185	8.6	14.5
대천5동	6,593	6.6	1,896	7.4	28.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4월 기준 자료, 보령시 「주민등록인구자료」

1-1-3. 읍·면·동 별 연령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인구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	25,545	7,305	5,984	5,097	4,111	3,048
비율	100.0	28.6	23.4	20.0	16.1	11.9
웅천읍	2,402	655	568	473	391	315
비율	100.0	27.3	23.6	19.7	16.3	13.1
주포면	570	172	144	103	73	78
비율	100.0	30.2	25.3	18.1	12.8	13.7
주교면	1,624	446	377	343	246	212
비율	100.0	27.5	23.2	21.1	15.1	13.1
오천면	1,732	502	416	285	302	227
비율	100.0	29.0	24.0	16.5	17.4	13.1
천북면	1,410	370	315	263	257	205
비율	100.0	26.2	22.3	18.7	18.2	14.5
청소면	1,234	285	238	284	243	184
비율	100.0	23.1	19.3	23.0	19.7	14.9
청라면	1,569	412	354	308	296	199
비율	100.0	26.3	22.6	19.6	18.9	12.7
남포면	1,965	504	425	405	327	304
비율	100.0	25.6	21.6	20.6	16.6	15.5
주산면	1,220	254	247	283	231	205
비율	100.0	20.8	20.2	23.2	18.9	16.8
미산면	836	198	167	203	140	128
비율	100.0	23.7	20.0	24.3	16.7	15.3
성주면	771	222	196	167	119	67
비율	100.0	28.8	25.4	21.7	15.4	8.7
대천1동	2,699	894	699	500	378	228
비율	100.0	33.1	25.9	18.5	14.0	8.4
대천2동	1,441	413	345	304	235	144
비율	100.0	28.7	23.9	21.1	16.3	10.0
대천3동	1,991	676	486	377	286	166
비율	100.0	34.0	24.4	18.9	14.4	8.3
대천4동	2,185	716	527	427	320	195
비율	100.0	32.8	24.1	19.5	14.6	8.9
대천5동	1,896	586	480	372	267	191
비율	100.0	30.9	25.3	19.6	14.1	10.1

자료: 보령시 「주민등록인구자료」

<참고> 충청남도 시군별 노인인구

(단위: 명, %)

구분	노인 (A)		인구 (B)		노인 비율 (A/B×100)
		비율		비율	
충청남도	394,476	100.0	2,118,457	100.0	18.6
천안시	69,187	17.5	654,251	30.9	10.6
공주시	27,034	6.9	105,743	5.0	25.6
보령시	25,545	6.5	100,646	4.8	25.4
아산시	40,908	10.4	313,757	14.8	13.0
서산시	31,716	8.0	174,645	8.2	18.2
논산시	30,534	7.7	118,032	5.6	25.9
계룡시	4,857	1.2	42,757	2.0	11.4
당진시	30,499	7.7	166,136	7.8	18.4
금산군	15,828	4.0	51,781	2.4	30.6
부여군	22,345	5.7	66,214	3.1	33.7
서천군	18,688	4.7	52,374	2.5	35.7
청양군	10,935	2.8	31,139	1.5	35.1
홍성군	23,375	5.9	99,973	4.7	23.4
예산군	24,108	6.1	78,726	3.7	30.6
태안군	18,917	4.8	62,283	2.9	30.4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4월 기준 자료

1-2. 전입인구¹⁾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보령시 내	충남 내 ²⁾	충남 외		
2019년	보령시 전체	12,027	5,909	1,379	4,739
	비율	100.0	49.1	11.5	39.4
	노인	1,087	489	104	494
	비율	100.0	45.0	9.6	45.4
2018년	보령시 전체	11,228	5,454	1,354	4,420
	비율	100.0	48.6	12.1	39.4
	노인	1,067	487	128	452
	비율	100.0	45.6	12.0	42.4
2017년	보령시 전체	13,960	7,488	1,499	4,973
	비율	100.0	53.6	10.7	35.6
	노인	1,085	539	109	437
	비율	100.0	49.7	10.0	40.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7-2019

- 1) 각 연도별 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 2) 보령시 내 전입인구 제외

1-2-1. 성별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보령시 내		충남 내		충남 외	
		비율		비율		비율	충남 외	비율
노인	1,087	100.0	489	45.0	104	9.6	494	45.4
남자	429	39.5	195	17.9	35	3.2	199	18.3
여자	658	60.5	294	27.0	69	6.3	295	27.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2-2. 연령별 전입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보령시 내		충남 내		충남 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087	100.0	489	45.0	104	9.6	494	45.4
65-69세	375	100.0	164	43.7	39	10.4	172	45.9
70-74세	270	100.0	120	44.4	22	8.1	128	47.4
75-79세	180	100.0	84	46.7	9	5.0	87	48.3
80세 이상	262	100.0	121	46.2	34	13.0	107	40.8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3.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

1-3-1.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외)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보령시 내	충청남도 내	충청남도 외					
				대전	충북	서울	경기	세종	기타
보령시 전체	12,027	5,909	1,379	578	225	883	1,293	137	1,623
비율	100.0	49.1	11.5	4.8	1.9	7.3	10.8	1.1	13.5
노인	1,087	489	104	58	15	121	168	7	125
비율	100.0	45.0	9.6	5.3	1.4	11.1	15.5	0.6	11.5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3-2. 전입인구의 전입 전 거주지(충청남도 내)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입인구	전입 전 거주지			
		보령시 내	충청남도 내 시(市)	충청남도 내 군(郡)	충청남도 외
보령시 전체	12,027	5,909	679	700	4,739
비율	100.0	49.1	5.6	5.8	39.4
노인	1,087	489	42	62	494
비율	100.0	45.0	3.9	5.7	45.4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4. 전출인구¹⁾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출인구	전출지			
		보령시 내	충남 내 ²⁾	충남 외	
2019년	보령시 전체	12,448	5,909	1,643	4,896
	비율	100.0	47.5	13.2	39.3
	노인	1,130	489	162	479
	비율	100.0	43.3	14.3	42.4
2018년	보령시 전체	11,923	5,454	1,566	4,903
	비율	100.0	45.7	13.1	41.1
	노인	1,055	487	135	433
	비율	100.0	46.2	12.8	41.0
2017년	보령시 전체	14,246	7,488	1,777	4,981
	비율	100.0	52.6	12.5	35.0
	노인	1,130	539	163	428
	비율	100.0	47.7	14.4	37.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7-2019

1) 각 년도별 1년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준
2) 보령시 내 전출인구 제외

1-4-1. 성별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출인구		보령시 내		충남 내		충남 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130	100.0	489	100.0	162	100.0	479	100.0
남자	454	40.2	195	39.9	61	37.7	198	41.3
여자	676	59.8	294	60.1	101	62.3	281	58.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4-2. 연령별 전출인구

(단위: 명, %)

구분	1년 내 전출인구	보령시 내	충남 내	충남 외
노인	1,130	489	162	479
비율	100.0	43.3	14.3	42.4
65-69세	363	164	54	145
비율	100.0	45.2	14.9	39.9
70-74세	259	120	27	112
비율	100.0	46.3	10.4	43.2
75-79세	194	84	28	82
비율	100.0	43.3	14.4	42.3
80세 이상	314	121	53	140
비율	100.0	38.5	16.9	44.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1-5.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보령시 전체	41,410	12,843	14,614	13,953
비율	100.0	31.0	35.3	33.7
노인 ²⁾	14,520	5,352	6,402	2,762
비율	100.0	36.9	44.1	19.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2) 일반가구 가구주 중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1-5-1. 연령별 가구원수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노인	14,520	5,352	6,402	2,766
비율	100.0	36.9	44.1	19.0
65-69세	3,906	1,247	1,829	830
비율	100.0	31.9	46.8	21.2
70-74세	3,508	1,131	1,701	676
비율	100.0	32.2	48.5	19.3
75-79세	3,176	1,145	1,455	576
비율	100.0	36.1	45.8	18.1
80-84세	2,473	1,060	967	446
비율	100.0	42.9	39.1	18.0
85세 이상	1,457	769	450	238
비율	100.0	52.8	30.9	16.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1-6. 유형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혈연가구 ²⁾		
		비혈연 5인이하가구 ³⁾	1인가구 ⁴⁾	
보령시 전체	41,410	27,583	984	12,843
비율	100.0	66.6	2.4	31.0
노인	14,520	8,995	173	5,352
비율	100.0	61.9	1.2	36.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2) 혈연가족관계로만 구성된 가구
- 3)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
- 4)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6-1. 연령별 유형별 노인가구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혈연가구	비혈연 5인이하가구	1인가구
노인	14,520	8,995	173	5,352
비율	100.0	61.9	1.2	36.9
65-69세	3,906	2,611	48	1,247
비율	100.0	66.8	1.2	31.9
70-74세	3,508	2,337	40	1,131
비율	100.0	66.6	1.1	32.2
75-79세	3,176	1,997	34	1,145
비율	100.0	62.9	1.1	36.1
80-84세	2,473	1,381	32	1,060
비율	100.0	55.8	1.3	42.9
85세 이상	1,457	669	19	769
비율	100.0	45.9	1.3	52.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1-7. 사망률¹⁾

1-7-1. 성별 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령시 전체	825.5	843.6	826.5	933.4	922.7	906.5	913.4	977.1	922.6
노인	3,367.2	3,536.4	3,200.9	3,540.3	3,422.1	3,399.9	3,264.0	3,461.0	3,089.6
남자	4,240.2	4,486.1	3,966.7	4,465.8	4,163.5	4,034.6	3,921.0	4,073.2	3,569.5
여자	2,770.1	2,884.6	2,672.4	2,894.3	2,899.0	2,947.1	2,792.5	3,020.3	2,741.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1-2019

1-7-2. 연령별 사망률

(단위: 10만명당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	3,367.2	3,536.4	3,200.9	3,540.3	3,422.1	3,399.9	3,264.0	3,461.0	3,089.6
65-69세	1,225.1	1,275.0	1,155.0	1,193.1	1,064.1	1,147.9	959.9	945.3	947.3
70-74세	1,618.9	1,807.7	1,782.2	1,890.6	1,682.0	1,862.7	1,743.9	1,891.7	1,582.6
75-79세	3,642.7	3,964.8	3,090.7	2,826.9	3,435.4	2,972.1	2,531.4	3,305.3	2,489.3
80-84세	6,341.0	5,843.8	5,479.5	6,107.9	5,516.4	5,681.3	5,557.9	5,159.6	4,322.7
85세 이상	13,750.0	13,762.7	12,095.0	14,530.2	12,768.2	11,934.6	11,777.7	11,501.2	10,993.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2019

1) 사망률(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사망자 수/해당연도 연앙인구 × 100,000

2. 경 제^Ⅱ

2-1.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보령시 전체	100.0	30.8	19.6	16.5	12.0	8.2	12.9	0.0
노인	100.0	56.5	23.7	10.7	5.0	2.1	2.1	0.0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2-1-1. 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무응답
노인	100.0	56.5	23.7	10.7	5.0	2.1	2.1	0.0
남자	100.0	41.7	30.4	14.2	7.7	2.8	3.2	0.0
여자	100.0	75.5	15.1	6.3	1.6	1.0	0.5	0.0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2-1-2. 연령별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노인	100.0	56.5	23.7	10.7	5.0	2.1	2.1
65-69세	100.0	29.2	32.3	21.9	8.3	5.2	3.1
70-74세	100.0	50.0	26.4	10.4	7.5	1.9	3.8
75-79세	100.0	61.2	22.3	10.7	3.9	1.0	1.0
80-84세	100.0	74.7	18.1	3.6	1.2	1.2	1.2
85세 이상	100.0	82.4	13.7	2.0	2.0	0.0	0.0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Ⅱ.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20년 6월 1일 기준 부과된 재산세 자료를 기초로 통계를 작성하였고, 2020년 사회조사는 표본조사라 노인인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2-1-3. 학력¹⁾별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노인	100.0	56.5	23.7	10.7	5.0	2.1	2.1
무학	100.0	66.7	21.2	7.7	3.2	1.0	0.3
중졸 이하	100.0	40.4	28.1	14.0	10.5	5.3	1.8
고등학교	100.0	27.8	37.0	16.7	1.9	5.6	11.1
대졸 이상	100.0	12.5	12.5	37.5	31.3	0.0	6.3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2-2. 소유 주택 수²⁾

(단위: %)

구분	주택 소유자 ³⁾ (A)	소유 주택 수 (B)	1인당 소유 주택 수 (B/A)
보령시 전체	30,112	41,506	1.38
노인	12,508	17,900	1.43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2-1. 성별 소유 주택 수

(단위: 명, 호, %)

구분	주택 소유자 (A)		소유 주택 수 (B)		1인당 소유 주택 수 (B/A)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2,508	100.0	17,900	100.0	1.43
남자	7,044	56.3	7,558	42.2	1.07
여자	5,464	43.7	10,342	57.8	1.89

자료: 충청남도 「2019년 보령시 사회조사」

- 1) 학력은 최종학력 졸업기준 (중졸 이하) 초등학교 졸업, 초등 중퇴, 중학교 졸업, 중퇴, 고등학교 중퇴 포함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이상 수료, 휴학, 중퇴 포함
- 2) 소유 주택 수는 2020. 6. 1. 보령시 소재지 기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 3)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며, 보령시 내 주택을 소유한 자를 나타냄

2-2-2. 연령별 소유 주택 수

(단위: 명, 호, %)

구분	주택 소유자 (A)		소유 주택 수 (B)		1인당 소유 주택 수 (B/A)
		비율		비율	
노인	12,508	100.0	17,900	100.0	1.43
65-69세	3,361	26.9	4,784	26.7	1.42
70-74세	3,066	24.5	4,498	25.1	1.47
75-79세	2,610	20.9	3,618	20.2	1.39
80-84세	1,960	15.7	2,808	15.7	1.43
85세 이상	1,511	12.1	2,192	12.2	1.45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3.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보령시 전체	41,506	37,271	4,235
노인	17,900	17,188	712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3-1. 성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7,900	100.0	17,188	100.0	712	100.0
남자	10,342	57.8	9,979	58.1	363	51.0
여자	7,558	42.2	7,209	41.9	349	49.0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3-2. 연령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노인	17,900	17,188	712
비율	100.0	96.0	4.0
65-69세	4,784	4,472	312
비율	100.0	93.5	6.5
70-74세	4,498	4,290	208
비율	100.0	95.4	4.6
75-79세	3,618	3,519	99
비율	100.0	97.3	2.7
80-84세	2,808	2,748	60
비율	100.0	97.9	2.1
85세 이상	2,192	2,159	33
비율	100.0	98.5	1.5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3-3. 읍·면·동별 소유형태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노인	17,900	17,188	712
비율	100.0	96.0	4.0
웅천읍	1,822	1,762	60
비율	100.0	96.7	3.3
주포면	511	476	35
비율	100.0	93.2	6.8
주교면	1,116	1,078	38
비율	100.0	96.6	3.4
오천면	1,314	1,281	33
비율	100.0	97.5	2.5
천북면	958	928	30
비율	100.0	96.9	3.1
청소면	884	862	22
비율	100.0	97.5	2.5
청라면	1,140	1,107	33
비율	100.0	97.1	2.9
남포면	1,368	1,326	42
비율	100.0	96.9	3.1
주산면	878	871	7
비율	100.0	99.2	0.8
미산면	623	617	6
비율	100.0	99.0	1.0
성주면	517	506	11
비율	100.0	97.9	2.1
대천1동	2,062	1,946	116
비율	100.0	94.4	5.6
대천2동	997	931	66
비율	100.0	93.4	6.6
대천3동	1,411	1,323	88
비율	100.0	93.8	6.2
대천4동	1,064	993	71
비율	100.0	93.3	6.7
대천5동	1,235	1,181	54
비율	100.0	95.6	4.4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4.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2-4-1. 성별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주택 ¹⁾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²⁾
노인	17,900	15,140	2,231	529
비율	100.0	84.6	12.5	3.0
남자	10,342	9,074	973	295
비율	100.0	87.7	9.4	2.9
여자	7,558	6,066	1,258	234
비율	100.0	80.3	16.6	3.1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4-2. 연령별 주택유형별 소유주택 수

(단위: 호, %)

구분	소유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공동주택
노인	17,900	15,140	2,231	529
비율	100.0	84.6	12.5	3.0
65-69세	4,784	3,684	904	196
비율	100.0	77.0	18.9	4.1
70-74세	4,498	3,702	647	149
비율	100.0	82.3	14.4	3.3
75-79세	3,618	3,128	391	99
비율	100.0	86.5	10.8	2.7
80-84세	2,808	2,550	202	56
비율	100.0	90.8	7.2	2.0
85세 이상	2,192	2,076	87	29
비율	100.0	94.7	4.0	1.3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1) 단독주택 범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업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 포함(창고 제외)

2) 기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5.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단위: 호, %)

구분	소유 건축물 수 ¹⁾	소유 형태	
		단독소유	공동소유
보령시 전체	16,259	13,698	2,561
비율	100.0	84.2	15.8
노인	5,979	5,343	636
비율	100.0	89.4	10.6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5-1. 성별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단위: 호, %)

구분	소유 건축물 수	단독소유		공동소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5,979	100.0	5,343	100.0	636	100.0
남자	4,423	74.0	4,059	76.0	364	57.2
여자	1,556	26.0	1,284	24.0	272	42.8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2-5-2. 연령별 소유형태별 건축물 현황

(단위: 호, %)

구분	소유 건축물 수	소유 형태	
		단독소유	공동소유
노인	5,979	5,343	636
비율	100.0	89.4	10.6
65-69세	2,494	2,212	282
비율	100.0	88.7	11.3
70-74세	1,705	1,525	180
비율	100.0	89.4	10.6
75-79세	1,052	925	127
비율	100.0	87.9	12.1
80세 이상	728	681	47
비율	100.0	93.5	6.5

자료: 보령시 「재산세 자료」

1) 소유 건축물 수는 2020. 6. 1. 보령시 소재지 기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 소유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출함.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단독으로 1호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다른 건축물 1호를 소유한 경우 2호로 계산함(국가, 법인 등 단체소유자 제외)

3. 일자리·연금^Ⅲ

3-1. 분기별 구직신청 건수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령시 전체	6,443	1,932	1,525	1,370	1,616
비율	100.0	30.0	23.7	21.3	25.0
노인	325	120	68	46	91
비율	100.0	36.9	20.9	14.2	28.0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자료」

3-1-1. 성별 분기별 구직신청 건수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건수	비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325	100.0	120	100.0	68	100.0	46	100.0	91	100.0
남자	207	63.7	84	70.0	35	51.5	33	71.7	55	60.4
여자	118	36.3	36	30.0	33	48.5	13	28.3	36	39.6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자료」

3-2.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3-2-1. 성별 구직희망 월평균 임금금액

(단위: 건, %)

구분	구직신청 건수	비율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기타 (무응답)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325	100.0	5	100.0	242	100.0	41	100.0	37	100.0	-	-
남자	207	63.7	-	-	133	55.0	37	90.2	37	100.0	-	-
여자	118	36.3	5	100.0	109	45.0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신청자료」

Ⅲ.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구직신청 건수는 2019. 1. 1. - 12. 31. 구직신청서 작성한 건수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 12. 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피보험자수를 나타냄

3-3. 고용보험 피보험자¹⁾

3-3-1.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A)		인구 ²⁾ (B)	피보험자 비율 (A/B×100)
	수	비율		
보령시 전체	19,755	100.0	100,646	19.6
남자	11,727	59.4	50,931	23.0
여자	8,028	40.6	49,715	16.1
노인	1,382	100.0	25,545	5.4
남자	835	60.4	10,825	7.7
여자	547	39.6	14,720	3.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3-3-2.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A)		인구 (B)	피보험자 비율 (A/B×100)
	수	비율		
노인	1,382	100.0	25,545	5.4
65-69세	803	58.1	7,305	11.0
70-74세	402	29.1	5,984	6.7
75-79세	129	9.3	5,097	2.5
80-84세	*	*	4,111	*
85세 이상	*	*	3,048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3-4. 가입기간³⁾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보령시 전체	19,755	5,516	5,458	2,448	3,131	3,202
비율	100.0	27.9	27.6	12.4	15.8	16.2
노인	1,382	509	425	143	200	105
비율	100.0	36.8	30.8	10.3	14.5	7.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 1)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 12. 31. 기준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전체 피보험자수로, 중복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최근 취득 사업장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함
- 2) 2020. 4. 30. 기준 인구수(외국인 제외)
- 3) 가입기간은 최근 취득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나타냄

3-4-1. 성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노인	1,382	509	425	143	200	105
비율	100.0	36.8	30.8	10.3	14.5	7.6
남자	835	270	235	102	143	85
비율	100.0	32.3	28.1	12.2	17.1	10.2
여자	547	239	190	41	57	20
비율	100.0	43.7	34.7	7.5	10.4	3.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3-4-2. 연령별 가입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노인	1,382	509	425	143	200	105
비율	100.0	36.8	30.8	10.3	14.5	7.6
65-69세	803	282	257	84	120	60
비율	100.0	35.1	32.0	10.5	14.9	7.5
70-74세	402	151	120	45	57	29
비율	100.0	37.6	29.9	11.2	14.2	7.2
75세 이상	177	76	48	14	23	16
비율	100.0	42.9	27.1	7.9	13.0	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3-5.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¹⁾

(단위: 명, %)

구분	피보험자 수 (A)	자격 취득자 (B)	취득자 비율 (B/A×100)	자격 상실자 (C)
보령시 전체	19,755	12,224	61.9	10,749
노인	1,382	1,513	109.5	1,4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1) 자격취득(상실)자는 최근 취득(상실) 사업장 기준으로 2019. 1. 1. ~ 12. 31. 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를 나타냄

3-5-1. 성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단위: 명, %)

구분	자격 취득자		자격 상실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인	1,513	100.0	1,470	100.0
남자	766	50.6	730	49.7
여자	747	49.4	740	50.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3-5-2. 연령별 성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자

(단위: 명, %)

구분	자격 취득자		남자		여자		자격 상실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인	1,513	100.0	766	100.0	747	100.0	1,470	100.0	730	100.0	740	100.0
65-69세	786	51.9	396	51.7	390	52.2	749	51.0	377	51.6	372	50.3
70세 이상	727	48.1	370	48.3	357	47.8	721	49.0	353	48.4	368	49.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자료」

3-6. 국민연금 가입규모¹⁾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가입인구 (A)	비율	인구 (B)	국민연금 가입비율 (A/B×100)
보령시 전체	36,568	100.0	100,646	36.3
남자	21,068	57.6	50,931	41.4
여자	15,500	42.4	49,715	31.2
노인	166	100.0	25,545	0.6
남자	16	9.6	10,825	0.1
여자	150	90.4	14,720	1.0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1) 2020. 4. 30. 기준 보령시 거주 인구가 2019. 12. 31. 기준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 경우 산정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18세-59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신청하여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음.

3-7.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수급인구 (A)	수급금액 (B)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 (B/A)
보령시 전체	15,532	54,518,145	3,510
노인	11,538	36,518,033	3,16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3-7-1. 성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수급인구 (A)	수급금액 (B)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 (B/A)
노인	11,538	36,518,033	3,165
남자	6,671	25,171,577	3,773
여자	4,867	11,346,456	2,331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3-7-2.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명, 천원)

구분	국민연금 수급인구 (A)	수급금액 (B)	1인당 국민연금 수급금액 (B/A)
노인	11,538	36,518,033	3,165
65-69세	3,725	16,420,983	4,408
70-74세	3,322	10,918,230	3,287
75-79세	2,731	5,999,685	2,197
80-84세	1,366	2,506,219	1,835
85세 이상	394	672,916	1,70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3-8.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천원, 명)

구분	연금			일시금 ¹⁾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보령시 전체	45,013,174	976,895	6,282,022	2,516,002
수급인원	11,965	245	2,870	516
1인당 수급액	3,762	3,987	2,189	4,876
노인	31,822,215	340,144	4,220,698	134,975
수급인원	9,321	86	2,099	32
1인당 수급액	3,414	3,955	2,011	4,21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3-8-1.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천원, 명)

구분	연금			일시금 ²⁾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인	31,822,215	340,144	4,220,698	134,975
수급인원	9,321	86	2,099	32
1인당 수급액	3,414	3,955	2,011	4,218
남자	24,606,379	302,376	225,873	36,949
수급인원	6,428	73	156	14
1인당 수급액	3,828	4,142	1,448	2,639
여자	7,215,836	37,768	3,994,825	98,026
수급인원	2,893	13	1,943	18
1인당 수급액	2,494	2,905	2,056	5,44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1)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3-8-2.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규모

(단위: 명, 천원)

구분	연금			일시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인	31,822,215	340,144	4,220,698	134,975
수급인원	9,321	86	2,099	32
1인당 수급액	3,414	3,955	2,011	4,218
65~69세	15,092,643	135,046	1,113,891	79,403
수급인원	3,175	37	500	13
1인당 수급액	4,754	3,650	2,228	6,108
70~74세	9,673,195	84,977	1,148,886	11,172
수급인원	2,720	24	571	7
1인당 수급액	3,556	3,541	2,012	1,596
75~79세	4,932,743	46,516	1,009,377	11,048
수급인원	2,186	18	524	*
1인당 수급액	2,257	2,584	1,926	*
80~84세	1,731,803	73,605	684,329	16,480
수급인원	988	7	364	7
1인당 수급액	1,753	10,515	1,880	2,354
85세 이상	391,831	-	264,215	16,872
수급인원	252	-	140	*
1인당 수급액	1,555	-	1,887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자료」

4. 복지^{IV}

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¹⁾	구분			수급률 ³⁾
		일반	시설 ²⁾	조건부·특례	
보령시 전체	5,087	4,193	411	483	5.1
노인	1,945	1,771	74	100	7.6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4-1-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일반		시설		조건부·특례		수급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945	100.0	1,771	100.0	74	100.0	100	100.0	7.6
남자	634	32.6	582	32.9	19	25.7	33	33.0	2.5
여자	1,311	67.4	1,189	67.1	55	74.3	67	67.0	5.1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4-1-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일반		시설		조건부·특례		수급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노인	1,945	100.0	1,771	100.0	74	100.0	100	100.0	7.6
65-69세	435	22.4	411	23.2	*	*	20	20.0	6.0
70-74세	410	21.1	374	21.1	*	*	32	32.0	6.9
75-79세	416	21.4	381	21.5	16	21.6	19	19.0	8.2
80-84세	351	18.0	315	17.8	20	27.0	16	16.0	8.6
85세 이상	333	17.1	290	16.4	30	40.5	13	13.0	11.0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IV.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각 급여별 중복과 관계없이 2020. 4. 30. 기준 수급자 대상이며, 장애인 등록인구는 2020. 4. 30. 기준 보령시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임

- 1) 2020. 4. 30. 기준 주소지가 보령시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외국인 제외)
- 2) '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별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를 나타내며, 이외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임
- 3) 수급률(%) = 수급인구/인구 수 x 100

4-2.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2-1.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인구	비율	생계급여	비율	의료급여	비율	주거급여	비율	교육급여	비율
보령시 전체	5,087	100.0	3,539	100.0	3,872	100.0	4,515	100.0	668	100.0
남자	2,272	44.7	1,644	46.5	1,798	46.4	1,972	43.7	343	51.3
여자	2,815	55.3	1,895	53.5	2,074	53.6	2,543	56.3	325	48.7
노인	1,945	100.0	1,359	100.0	1,483	100.0	1,846	100.0	-	-
남자	634	32.6	453	33.3	508	34.3	597	32.3	-	-
여자	1,311	67.4	906	66.7	975	65.7	1,249	67.7	-	-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4-2-2.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²⁾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인구	비율	생계급여	비율	의료급여	비율	주거급여	비율
노인	1,945	100.0	1,359	100.0	1,483	100.0	1,846	100.0
65-69세	435	22.4	324	23.8	363	24.5	416	22.5
70-74세	410	21.1	281	20.7	322	21.7	398	21.6
75-79세	416	21.4	302	22.2	316	21.3	393	21.3
80-84세	351	18.0	228	16.8	246	16.6	332	18.0
85세 이상	333	17.1	224	16.5	236	15.9	307	16.6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1) 수급인구 전체는 급여별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수치임
 2) 수급인구 전체는 급여별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수치임

4-2-3. 읍·면·동 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구분	수급인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인구	비율	생계급여	비율	의료급여	비율	주거급여	비율
노인	1,945	100.0	1,359	100.0	1,483	100.0	1,846	100.0
응천읍	143	7.4	110	8.1	115	7.8	137	7.4
주포면	42	2.2	23	1.7	26	1.8	41	2.2
주교면	82	4.2	52	3.8	58	3.9	72	3.9
오천면	73	3.8	53	3.9	60	4.0	69	3.7
천북면	84	4.3	54	4.0	59	4.0	78	4.2
청소면	73	3.8	54	4.0	62	4.2	69	3.7
청라면	71	3.7	50	3.7	57	3.8	64	3.5
남포면	147	7.6	96	7.1	111	7.5	121	6.6
주산면	85	4.4	42	3.1	47	3.2	81	4.4
미산면	44	2.3	31	2.3	32	2.2	41	2.2
성주면	89	4.6	62	4.6	65	4.4	82	4.4
대천1동	220	11.3	144	10.6	158	10.7	214	11.6
대천2동	83	4.3	55	4.0	59	4.0	83	4.5
대천3동	170	8.7	113	8.3	128	8.6	168	9.1
대천4동	433	22.3	341	25.1	365	24.6	432	23.4
대천5동	106	5.4	79	5.8	81	5.5	94	5.1

자료: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4-3. 장애인 등록인구

4-3-1. 성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¹⁾	비율		장애인 비율 ²⁾
		비율	비율	
보령시 전체	8,219	100.0		8.2
남자	5,046	61.4		9.9
여자	3,173	38.6		6.4
노인	4,449	100.0		17.4
남자	2,403	54.0		22.2
여자	2,046	46.0		13.9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1) 2020. 4. 30. 기준 주소지가 보령시인 장애인 등록인구(외국인 제외)

2) 장애인 비율(%) = 장애인 등록인구/인구 수 x 100

4-3-2. 연령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	4,449	100.0	17.4
65-69세	977	22.0	13.4
70-74세	1,004	22.6	16.8
75-79세	1,000	22.5	19.6
80-84세	854	19.2	20.8
85세 이상	614	13.8	20.1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3-3.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비율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	4,449	100.0	17.4
웅천읍	411	9.2	17.1
주포면	86	1.9	15.1
주교면	254	5.7	15.6
오천면	269	6.0	15.5
천북면	246	5.5	17.4
청소면	237	5.3	19.2
청라면	284	6.4	18.1
남포면	338	7.6	17.2
주산면	204	4.6	16.7
미산면	159	3.6	19.0
성주면	215	4.8	27.9
대천1동	423	9.5	15.7
대천2동	243	5.5	16.9
대천3동	364	8.2	18.3
대천4동	403	9.1	18.4
대천5동	313	7.0	16.5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4.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4-4-1. 성별 장애유형별¹⁾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보령시 전체	8,219	6,692	381	1,146
비율	100.0	81.4	4.6	13.9
남자	5,046	4,081	255	710
비율	100.0	80.9	5.1	14.1
여자	3,173	2,611	126	436
비율	100.0	82.3	4.0	13.7
노인	4,449	4,189	182	78
비율	100.0	94.2	4.1	1.8
남자	2,403	2,234	123	46
비율	100.0	93.0	5.1	1.9
여자	2,046	1,955	59	32
비율	100.0	95.6	2.9	1.6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4-2.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노인	4,449	4,189	182	78
비율	100.0	94.2	4.1	1.8
65-69세	977	892	44	41
비율	189.4	91.3	4.9	93.2
70-74세	1,004	929	52	23
비율	100.0	92.5	5.2	2.3
75-79세	1,000	947	*	*
비율	100.0	94.7	*	*
80-84세	854	826	*	*
비율	100.0	96.7	*	*
85세 이상	614	595	*	*
비율	100.0	96.9	*	*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1)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관의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나뉜다.

4-4-3. 읍·면·동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기관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노인	4,449	4,189	182	78
비율	100.0	94.2	4.1	1.8
웅천읍	411	383	17	11
비율	100.0	93.2	4.1	2.7
주포면	86	81	*	*
비율	100.0	94.2	*	*
주교면	254	244	*	*
비율	100.0	96.1	*	*
오천면	269	255	*	*
비율	100.0	94.8	*	*
천북면	246	233	*	*
비율	100.0	94.7	*	*
청소면	237	228	*	*
비율	100.0	96.2	2.5	*
청라면	284	269	*	*
비율	100.0	94.7	*	*
남포면	338	314	16	8
비율	100.0	92.9	4.7	2.4
주산면	204	192	7	5
비율	100.0	94.1	3.4	2.5
미산면	159	152	*	*
비율	100.0	95.6	*	*
성주면	215	201	9	5
비율	100.0	93.5	4.2	2.3
대천1동	423	400	*	*
비율	100.0	94.6	*	*
대천2동	243	224	*	*
비율	100.0	92.2	*	*
대천3동	364	346	13	5
비율	100.0	95.1	3.6	1.4
대천4동	403	377	14	12
비율	100.0	93.5	3.5	3.0
대천5동	313	290	16	7
비율	100.0	92.7	5.1	2.2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5.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4-5-1.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보령시 전체	8,219	3,230	4,989
비율	100.0	39.3	60.7
남자	5,046	2,146	2,900
비율	100.0	42.5	57.5
여자	3,173	1,084	2,089
비율	100.0	34.2	65.8
노인	4,449	1,304	3,145
비율	100.0	29.3	70.7
남자	2,403	849	1,554
비율	100.0	35.3	64.7
여자	2,046	455	1,591
비율	100.0	22.2	77.8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5-2.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노인	4,449	1,304	3,145
비율	100.0	29.3	70.7
65-69세	977	336	641
비율	100.0	34.4	65.6
70-74세	1,004	328	676
비율	100.0	32.7	67.3
75-79세	1,000	293	707
비율	100.0	29.3	70.7
80-84세	854	212	642
비율	100.0	24.8	75.2
85세 이상	614	135	479
비율	100.0	22.0	78.0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5-3. 읍·면·동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인	4,449	1,304	3,145
비율	100.0	29.3	70.7
응천읍	411	115	296
비율	100.0	28.0	72.0
주포면	86	15	71
비율	100.0	17.4	82.6
주교면	254	59	195
비율	100.0	23.2	76.8
오천면	269	62	207
비율	100.0	23.0	77.0
천북면	246	54	192
비율	100.0	22.0	78.0
청소면	237	52	185
비율	100.0	21.9	78.1
청라면	284	93	191
비율	100.0	32.7	67.3
남포면	338	83	255
비율	100.0	24.6	75.4
주산면	204	50	154
비율	100.0	24.5	75.5
미산면	159	39	120
비율	100.0	24.5	75.5
성주면	215	113	102
비율	100.0	52.6	47.4
대천1동	423	120	303
비율	100.0	28.4	71.6
대천2동	243	64	179
비율	100.0	26.3	73.7
대천3동	364	141	223
비율	100.0	38.7	61.3
대천4동	403	170	233
비율	100.0	42.2	57.8
대천5동	313	74	239
비율	100.0	23.6	76.4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6. 장애유형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등록인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령시 전체		8,219	3,230	4,989
비율		100.0	39.3	60.7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6,692	1,847	4,845
	비율	100.0	27.6	72.4
	내부기관의 장애	381	237	144
	비율	100.0	62.2	37.8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897	897	-
	비율	100.0	100.0	-
	정신장애	249	249	-
	비율	100.0	100.0	-
노인		4,449	1,304	3,145
비율		100.0	29.3	70.7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4,189	1,097	3,092
	비율	100.0	26.2	73.8
	내부기관의 장애	182	129	53
	비율	100.0	70.9	29.1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47	47	-
	비율	100.0	100.0	-
	정신장애	31	31	-
	비율	100.0	100.0	-

자료: 보령시 「장애인등록자료」

4-7. 노인복지시설²⁾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총 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2019년	424	-	11	406	7
비율	100.0	-	2.6	95.8	1.7
2018년	422	-	12	403	7
비율	100.0	-	2.8	95.5	1.7
2017년	419	-	12	399	8
비율	100.0	-	2.9	95.2	1.9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7-2019), 각 연도 12월 말 기준

- 1)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관의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로 나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뉨.
- 2)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구분됨

5. 건강^v

5-1.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보령시 전체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대비 노인비율 (B/A×100)
	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A)	비율	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B)	비율	
2019년	100,646	99,179	98.5	25,545	23,336	91.4	23.5
2018년	101,549	99,098	97.6	24,431	22,428	91.8	22.6
2017년	102,716	100,267	97.6	23,836	21,924	92.0	2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1-1. 성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적용인구	직장			공교 ¹⁾	지역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노인	23,336	13,115	1,610	11,505	2,401	7,820
비율	100.0	56.2	6.9	49.3	10.3	33.5
남자	9,978	5,669	996	4,673	930	3,379
비율	100.0	56.8	10.0	46.8	9.3	33.9
여자	13,358	7,446	614	6,832	1,471	4,441
비율	100.0	56.0	4.6	51.1	11.0	3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1-2.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적용인구	직장			공교	지역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노인	23,336	13,115	1,610	11,505	2,401	7,820
비율	100.0	56.2	6.9	49.3	10.3	33.5
65-69세	6,718	3,805	987	2,818	408	2,505
비율	100.0	56.6	14.7	41.9	6.1	37.3
70-74세	5,449	3,159	442	2,717	479	1,811
비율	100.0	58.0	8.1	49.9	8.8	33.2
75-79세	4,785	2,732	140	2,592	631	1,422
비율	100.0	57.1	2.9	54.2	13.2	29.7
80-84세	3,814	2,118	*	2,080	556	1,140
비율	100.0	55.5	*	54.5	14.6	29.9
85세 이상	2,570	1,301	*	1,298	327	942
비율	100.0	50.6	*	50.5	12.7	36.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V. 2019. 12. 31.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의료급여는 제외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5-2. 요양급여실적

(단위: 천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			입원	외래	약국		
		입원	외래	약국					
2019년	보령시 전체	203,785,522	79,557,525	79,909,404	44,318,593	154,985,510	64,962,505	57,971,702	32,051,302
	비율	100.0	39.0	39.2	21.7	100.0	41.9	37.4	20.7
	노인	111,063,176	48,970,417	38,639,997	23,452,762	85,765,860	39,523,490	29,201,700	17,040,670
	비율	100.0	44.1	34.8	21.1	100.0	46.1	34.0	19.9
2018년	보령시 전체	187,944,795	73,375,089	72,701,197	41,868,509	142,832,545	59,929,047	52,547,239	30,356,259
	비율	100.0	39.0	38.7	22.3	100.0	42.0	36.8	21.3
	노인	101,043,086	45,567,953	34,018,551	21,456,582	78,011,501	36,744,634	25,613,555	15,653,312
	비율	100.0	45.1	33.7	21.2	100.0	47.1	32.8	20.1
2017년	보령시 전체	172,281,486	66,394,381	67,060,865	38,826,239	129,740,883	54,319,167	47,323,709	28,098,007
	비율	100.0	38.5	38.9	22.5	100.0	41.9	36.5	21.7
	노인	89,353,946	39,058,285	30,782,903	19,512,758	67,742,715	31,497,946	22,061,259	14,183,510
	비율	100.0	43.7	34.5	21.8	100.0	46.5	32.6	2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2-1. 성별 요양급여실적

(단위: 천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			입원	외래	약국	
		입원	외래	약국				
노인	111,063,176	48,970,417	38,639,997	23,452,762	85,765,860	39,523,490	29,201,700	17,040,670
비율	100.0	44.1	34.8	21.1	100.0	46.1	34.0	19.9
남자	47,987,128	20,724,080	17,010,940	10,252,108	37,373,549	17,071,673	12,825,986	7,475,890
비율	100.0	43.2	35.4	21.4	100.0	45.7	34.3	20.0
여자	63,076,048	28,246,337	21,629,057	13,200,654	48,392,311	22,451,818	16,375,714	9,564,780
비율	100.0	44.8	34.3	20.9	100.0	46.4	33.8	19.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2-2. 연령별 요양급여실적

(단위: 천원, %)

구분	진료비			급여비				
	입원	외래	약국	입원	외래	약국	비율	비율
노인	111,063,176	48,970,417	38,639,997	23,452,762	85,765,860	39,523,490	29,201,700	17,040,670
비율	100.0	44.1	34.8	21.1	100.0	46.1	34.0	19.9
65-69세	24,437,532	8,173,825	10,451,204	5,812,503	18,746,323	6,769,980	7,761,666	4,214,677
비율	100.0	33.4	42.8	23.8	100.0	36.1	41.4	22.5
70-74세	24,621,462	9,398,707	9,669,435	5,553,320	19,014,369	7,697,903	7,270,388	4,046,078
비율	100.0	38.2	39.3	22.6	100.0	40.5	38.2	21.3
75-79세	25,934,553	11,317,101	9,352,456	5,264,995	20,213,189	9,204,163	7,182,652	3,826,373
비율	100.0	43.6	36.1	20.3	100.0	45.5	35.5	18.9
80-84세	21,821,669	11,147,162	6,246,501	4,428,006	16,916,584	8,920,672	4,770,564	3,225,348
비율	100.0	51.1	28.6	20.3	100.0	52.7	28.2	19.1
85세 이상	14,247,961	8,933,623	2,920,400	2,393,938	10,875,395	6,930,771	2,216,430	1,728,194
비율	100.0	62.7	20.5	16.8	100.0	63.7	20.4	1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3. 만성질환 진료인원¹⁾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보령시	노인	비율	보령시	노인	비율	보령시	노인	비율
고혈압	18,341	9,944	54.2	18,851	10,244	54.3	19,553	10,701	54.7
당뇨	8,337	4,283	51.4	8,691	4,493	51.7	9,070	4,760	52.5
신경계질환	8,395	3,705	44.1	8,467	3,772	44.5	8,380	4,016	47.9
심장질환	3,913	2,498	63.8	3,869	2,551	65.9	4,037	2,686	66.5
정신질환	8,161	4,413	54.1	8,770	4,778	54.5	9,198	5,110	55.6
간질환	3,602	878	24.4	3,962	1,061	26.8	4,662	1,307	2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정신질환(F00~F99, G40~G41), 간질환(B18~B19, K70~K77)

5-3-1. 성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노인		
		남자	여자
고혈압	10,701	4,061	6,640
비율	100.0	37.9	62.1
당뇨	4,760	2,178	2,582
비율	100.0	45.8	54.2
신경계질환	4,016	1,565	2,451
비율	100.0	39.0	61.0
심장질환	2,686	1,292	1,394
비율	100.0	48.1	51.9
정신질환	5,110	1,729	3,381
비율	100.0	33.8	66.2
간질환	1,307	668	639
비율	100.0	51.1	4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3-2.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노인	연령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고혈압	10,701	2,589	2,406	2,324	1,993	1,389
비율	100.0	24.2	22.5	21.7	18.6	13.0
당뇨	4,760	1,331	1,267	1,070	749	343
비율	100.0	28.0	26.6	22.5	15.7	7.2
신경계질환	4,016	962	909	933	775	437
비율	100.0	24.0	22.6	23.2	19.3	10.9
심장질환	2,686	608	603	600	544	331
비율	100.0	22.6	22.4	22.3	20.3	12.3
정신질환	5,110	840	925	1,127	1,211	1,007
비율	100.0	16.4	18.1	22.1	23.7	19.7
간질환	1,307	507	369	249	134	48
비율	100.0	38.8	28.2	19.1	10.3	3.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4. 만성질환 진료비¹⁾

(단위: 천원,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2019년	보령시 전체	10,654,844	7,477,749	7,108,410	7,505,184	10,378,340	2,485,540
	진료인원	19,553	9,070	8,380	4,037	9,198	4,662
	1인당 진료비	545	824	848	1,859	1,128	533
	노인	6,346,940	4,010,546	4,903,114	5,092,925	7,339,927	815,282
	진료인원	10,701	4,760	4,016	2,686	5,110	1,307
	1인당 진료비	593	843	1,221	1,896	1,436	624
2018년	보령시 전체	10,046,717	6,950,437	6,366,731	7,379,562	9,796,573	2,186,842
	진료인원	18,851	8,691	8,467	3,869	8,770	3,962
	1인당 진료비	533	800	752	1,907	1,117	552
	노인	5,889,074	3,749,620	4,448,699	5,047,146	7,124,810	526,632
	진료인원	10,244	4,493	3,772	2,551	4,778	1,061
	1인당 진료비	575	835	1,179	1,978	1,491	496
2017년	보령시 전체	9,510,128	5,994,585	5,557,450	6,717,694	8,087,519	1,981,004
	진료인원	18,341	8,337	8,395	3,913	8,161	3,602
	1인당 진료비	519	719	662	1,717	991	550
	노인	5,599,546	3,211,355	3,834,967	4,461,308	5,548,979	501,395
	진료인원	9,944	4,283	3,705	2,498	4,413	878
	1인당 진료비	563	750	1,035	1,786	1,257	57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4-1. 성별 만성질환 진료비

(단위: 천원,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노인	6,346,940	4,010,546	4,903,114	5,092,925	7,339,927	815,282
진료인원	10,701	4,760	4,016	2,686	5,110	1,307
1인당 진료비	593	843	1,221	1,896	1,436	624
남자	2,312,563	1,793,682	1,589,051	2,324,955	2,112,800	335,285
진료인원	4,061	2,178	1,565	1,292	1,729	668
1인당 진료비	569	824	1,015	1,800	1,222	502
여자	4,034,377	2,216,864	3,314,063	2,767,970	5,227,127	479,997
진료인원	6,640	2,582	2,451	1,394	3,381	639
1인당 진료비	608	859	1,352	1,986	1,546	75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진료비는 약국포함,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2020년 6월 청구분 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정신질환(F00-F99, G40-G41), 간질환(B18-B19, K70-K77)

5-4-2.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비

(단위: 천원, 명)

구분	고혈압	당뇨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	간질환
노인	6,346,940	4,010,546	4,903,114	5,092,925	7,339,927	815,282
진료인원	10,701	4,760	4,016	2,686	5,110	1,307
1인당 진료비	593	843	1,221	1,896	1,436	624
65-69세	1,481,284	1,084,747	572,768	1,068,875	601,811	394,829
진료인원	2,589	1,331	962	608	840	507
1인당 진료비	572	815	595	1,758	716	779
70-74세	1,413,982	1,037,646	849,549	1,013,801	741,894	198,813
진료인원	2,406	1,267	909	603	925	369
1인당 진료비	588	819	935	1,681	802	539
75-79세	1,419,675	975,373	1,348,307	1,316,479	1,164,500	105,708
진료인원	2,324	1,070	933	600	1,127	249
1인당 진료비	611	912	1,445	2,194	1,033	425
80-84세	1,173,550	629,717	1,261,892	1,059,188	1,964,009	91,328
진료인원	1,993	749	775	544	1,211	134
1인당 진료비	589	841	1,628	1,947	1,622	682
85세 이상	858,449	283,063	870,598	634,582	2,867,713	24,604
진료인원	1,389	343	437	331	1,007	48
1인당 진료비	618	825	1,992	1,917	2,848	5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5. 주요 암 진료인원¹⁾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령시	노인	비율	보령시	노인	비율	보령시	노인	비율
위암	501	309	61.7	484	285	58.9	492	306	62.2
대장암	401	236	58.9	409	259	63.3	422	276	65.4
간암	176	106	60.2	186	118	63.4	194	116	59.8
폐암	275	198	72.0	279	200	71.7	311	226	7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5-1. 성별 주요 암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인	306	100.0	276	100.0	116	100.0	226	100.0
남자	217	70.9	146	52.9	89	76.7	153	67.7
여자	89	29.1	130	47.1	27	23.3	73	3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5-5-2. 연령별 주요 암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노인	306	100.0	276	100.0	116	100.0	226	100.0
65-69세	69	22.5	74	26.8	35	30.2	43	19.0
70-74세	82	26.8	65	23.6	35	30.2	73	32.3
75-79세	72	23.5	73	26.4	24	20.7	57	25.2
80-84세	56	18.3	36	13.0	17	14.7	40	17.7
85세 이상	27	8.8	28	10.1	5	4.3	13	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6. 주요 암 진료비¹⁾

(단위: 천원, 명, %)

구분	인원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2019년	보령시 전체	1,488,526	2,503,591	1,932,209	2,959,062
	진료인원	492	422	194	311
	1인당 진료비	3,025	5,933	9,960	9,515
	노인	988,011	1,450,070	886,869	2,064,211
	진료인원	306	276	116	226
	1인당 진료비	3,229	5,254	7,645	9,134
2018년	보령시 전체	1,561,385	2,052,644	1,576,177	2,573,333
	진료인원	484	409	186	279
	1인당 진료비	3,226	5,019	8,474	9,223
	노인	931,120	1,387,924	916,384	1,947,671
	진료인원	285	259	118	200
	1인당 진료비	3,267	5,359	7,766	9,738
2017년	보령시 전체	1,679,497	1,817,534	1,334,851	2,736,094
	진료인원	501	401	176	275
	1인당 진료비	3,352	4,533	7,584	9,949
	노인	979,005	1,170,660	752,162	1,748,729
	진료인원	309	236	106	198
	1인당 진료비	3,168	4,960	7,096	8,8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1) 2019. 12. 31. 수진기준 산정, 진료비는 약국포함,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2020년 6월 청구분 까지 반영),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 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발췌코드는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5-6-1. 성별 주요 암 진료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노인	988,011	1,450,070	886,869	2,064,211
진료인원	306	276	116	226
1인당 진료비	3,229	5,254	7,645	9,134
남자	718,022	804,352	674,603	1,371,371
진료인원	217	146	89	153
1인당 진료비	3,309	5,509	7,580	8,963
여자	269,989	645,718	212,266	692,840
진료인원	89	130	27	73
1인당 진료비	3,034	4,967	7,862	9,49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5-6-2. 연령별 주요 암 진료비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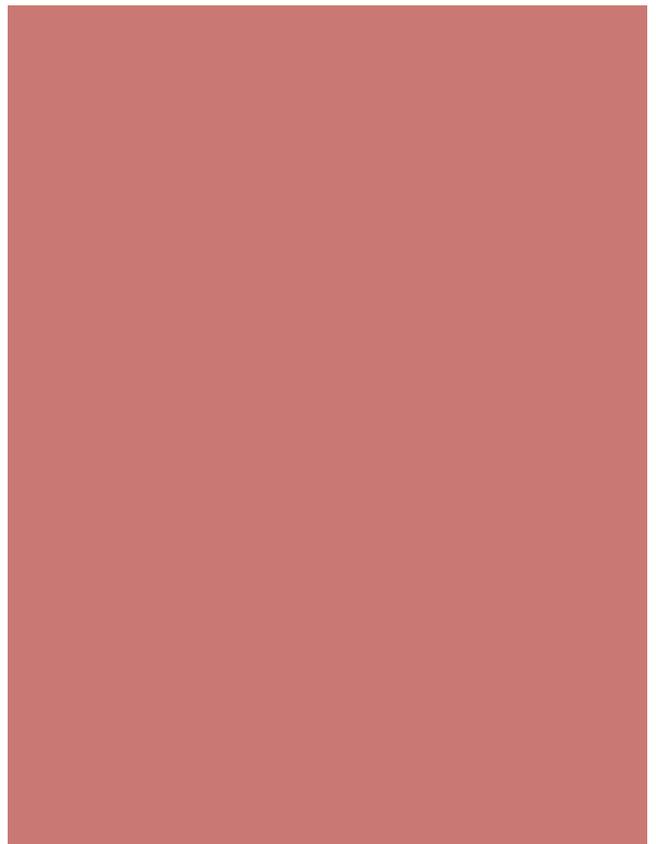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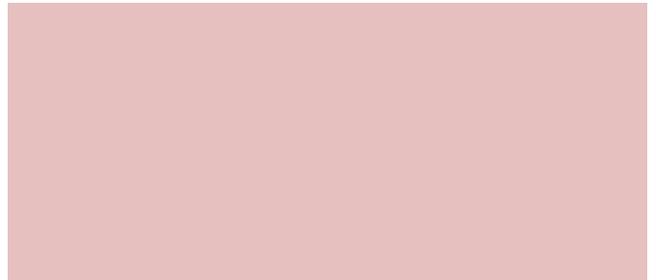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노인	988,011	1,450,070	886,869	2,064,211
진료인원	306	276	116	226
1인당 진료비	3,229	5,254	7,645	9,134
65-69세	235,379	511,330	242,708	352,783
진료인원	69	74	35	43
1인당 진료비	3,411	6,910	6,935	8,204
70-74세	240,171	288,174	194,452	785,217
진료인원	82	65	35	73
1인당 진료비	2,929	4,433	5,556	10,756
75-79세	153,219	296,798	280,391	493,202
진료인원	72	73	24	57
1인당 진료비	2,128	4,066	11,683	8,653
80-84세	230,795	233,261	155,691	389,359
진료인원	56	36	17	40
1인당 진료비	4,121	6,479	9,158	9,734
85세 이상	128,447	120,507	13,627	43,650
진료인원	27	28	5	13
1인당 진료비	4,757	4,304	2,725	3,3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IV

주요 용어 및 해설



주요 용어 및 해설

1. 「인구·가구」 부문

○ 노인인구

-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함.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하나,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성 인구 ($\text{남성 인구} / \text{여성 인구} \times 100$)

○ 인구이동

- (전입)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임
- 시군구 내 전입 : 이동 전후의 시군구는 같고 행정 읍면동이 다른 전입
- 시도 내 전입 : 이동 전후의 시도는 같고 시군구가 다른 전입
- 시도 외 전입 : 이동 전후의 시도가 다른 전입
- 전출 :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임

○ 가구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노인가구 : 가구주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인구동향

- (사망) 출생 후 생명의 증거(호흡, 심장/제대의 박동, 수의근의 명백한 움직임 등)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 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 상태

-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
- 연령별 사망률 : 특정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당 해당 연령별 총 사망자 수
(특정 연령별 연간 총 사망자 수/해당 연령별 연앙인구 x 100,000)
- (주민등록 연앙인구)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각종 인구동태을 산출시 분모인구로 활용(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 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의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2. 「경제」 부문

○ 재산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주택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분류한다.
- ※ 주택의 요건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빈집 :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
-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가구용 주택’도 포함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및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일자리·연금」 부문

- 구직신청자료 : 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

- 구직 : 일정한 직업을 찾음
- 희망임금 :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희망하는 임금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 제외됨
- **(피보험자격취득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 **(피보험자격상실자)** 이직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국민연금

-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공적 연금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 국민연금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일시금 : 법령에 규정된 각각의 급여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

4. 「복지」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 (일반수급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 무능력자이고 흔히 말하는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능
-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특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7종의(생계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급여를 보장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51,640원(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만성질환자: 1,000원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4급지(그 외)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A의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A의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A의 43% 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A의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8. 5.

○ 장애인등록 인구: 20. 4. 30. 기준 보령시 등록장애인* 인구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 인구 비율**

-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장애인 인구 수 (장애인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X 100)

○ **장애 유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4개 중분류(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활용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2종류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심한 장애로의 장애정도 상향이 필요하므로 중복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에 따름
-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개정[시행, 2019.7.1.]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함
- 의학적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함

○ 노인복지시설

-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은 그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한다.

분류	세분류	내용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게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5. 「건강」 부문

○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내국인 및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군인·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공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건강보험자료

- (요양급여)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받게되는 보험 혜택을 말함.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진료비)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 1인당 진료비 = 진료비/진료인원
- (급여비) 건강보험공단이 현물급여비 및 현금급여비로 지급한 총액으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 상환제(사후환급액),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포함
 - ▶ 1인당 급여비 = 급여비/진료인원
- (진료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
- 요양기관 : 환자를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주요 만성질환(6종)

- 갑작스러운 증상이 없어 서서히 발병하여 치료와 치유에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비감염성 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를 사용함
 - ▶ 질병코드 :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정신질환(F00-F99, G40-G41), 간질환(B18-B19,

K70-K77)

○ 주요 암(4종)

-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으로 구분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를 사용함
- ▶ 질병코드: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폐암(C33~C34)

V

행정자료 서식



행정자료 서식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1. 28.>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항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등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우공화빌라, 1층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짐세, 재개발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input type="checkbox"/>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전입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	-----	---	---	---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등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전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 2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출·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출,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작성방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망자

-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사망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신고인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출인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⑤ 최종 졸업학교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부서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 한정증인, 포기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증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증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증인(민법 제10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증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

4. 재산세(주택)과세대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관리번호							
시군구	읍·면·동	특	본번	부번	동	호	가지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작성 번호	
----------	--

1. 납세의무자 현황

가. 건물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나. 토지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2. 건물 현황

배치번호	구조	신축연도	취득일자	면적(m ²)		복층면적	층수	가구수	과표가감	증과감면		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비고
				본면적	지하대피소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공유면적	지하차고					
							/									
							/									

3. 토지 현황

일련번호	시군구	동리	특	순번	지목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면적	증과감면		과세특례		취득일자	비고
	법정동	본번	부번		공부현황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행정동	동	호수										면적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4. 변동사항 관리

가. 납세의무자 변동

①건 물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②토 지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나. 건물 변동

배치 번호	구조	신 축 연 도	취 득 일 자	면적(m ²)				복 층 면 적	층 수	가 구 수	과 표 가 감	중과 감면		과세 특례		지역자원 시설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본면적		지하대피소						코 드	코 드 명	코 드	코 드 명	코 드	코 드 명		
				지하면적		지상차고													
				공유면적		지하차고						면적		면적		면적			
								/											
								/											

다. 토지 변동

일련 번호	시군구	동리	특	순 번	지목		개별 공시 지가	적 용 률	면적	중과감면		과세특례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법정동	본번	부번		공부	현황				코 드	코 드 명	코 드	코 드 명		
	행정동	동	호수												

라. 주택공시가격 변동

(단위: 천원)

연도				
가격				

(주) 본 서식의 점선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사업체명: 출장소·공장·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 ④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⑤자본금: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 ⑥채용제목: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되, 성별, 학력 등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0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또는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예정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자주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파견업체가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③사업내용란에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적어야 하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에서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구인정보가 공유됩니다.
 - 고용형태 중 “대체인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4. 구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 퇴직금 형태)을 정확히 적습니다.
5.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인알선정보와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문자로 제공됩니다.
6.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3쪽의 우대조건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 ※ 병역특례대상자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7.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이며, 신청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어 구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쪽)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우대조건	[] 특정 전공자()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 프로그램 [] 기타()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자(외국어명: , 수준 [] 상 [] 중 [] 하)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운전 가능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청년 [] 여성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군 전역 간부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보호취업지원대상자 [] 외국인
	[] 장애인과 함께 채용([] 장애인 우대) [] 장애인만 채용 (장애인고용 희망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 통근버스 [] 기숙사 [] 차량 유지비 [] 교육비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직원대출제도 [] 기타()
	[] 장애인용주차장 [] 장애인용승강기 [] 건물내경사로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작업환경	작업장소	[] 실내 [] 실내·외 [] 실외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5kg 이상 20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음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

그 밖의 희망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15일 이상 2개월 이내)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사업체명: 출장소·공장·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 ④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예정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인알선정보와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문자로 제공됩니다.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어 구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쪽)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작업환경	작업장소	[]실내	[]실내·외	[]실외
	드는 힘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5kg 이상 20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음	[]일부 서서 하는 작업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 필요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큰 물품의 조립작업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한손으로 작업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 (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비공개 사유: _____)
--	------------------------------

그 밖의 희망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둘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영업소 명칭											
사업장 소재지		단위사업장 명칭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고용보험·산재보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액 액·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지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간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만 작성)
1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2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3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4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제2쪽)
국민연금	임금대상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로 없음
건강보험	건강보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충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시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297mm x 210mm [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 방재 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복제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경비·생산직 (원금·단금·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자(임원·부서장)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 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822 금속인쇄 및 제판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도금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11 회원의원,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1. 교육직	53. 음식 서비스직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2. 법률직	54. 경호·경비직	
014 민중·연령·숙박·음식·경비·철소 관리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41 경호 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83. 전기·전자·설치·경비·생산직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3. 사회복지·종교직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835 전기전자 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836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55.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설치·경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21 정부 공공행정 전문가	25. 군인	561 청소·발열 및 기타 서비스원 562 침착 후차관리 및 기타 저비스 단상 종사자	85. 화학·환경·설치·경비·생산직
022 경영 인사 전문가	30. 보건·의료직	563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조립원 564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조립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
023 회계·세무·감정·회계사·회계사	3. 보건·의료직	565 돌봄 서비스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024 광고·조사·상표·기획·행사·기획 전문가	30. 보건·의료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025 공공 행정 사무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위생·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7. 식품·가공·생산직
026 경영지원 사무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술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8. 인쇄·복제·공예 및 기타 설치·경비·생산직
028 무역·운송·통계·미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81 인쇄·복제·공예 및 기타 설치·경비·생산직 882 목재·플라스틱·생선기계 조직원 883 가구·목제품·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029 인쇄·교육·상업·서비스·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9. 제조 단상직
03. 금융·보험직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90 제조 단상 종사자
031 금융·보험 전문가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90. 농림어업직
032 금융·보험 업무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상 종사자
033 금융·보험 영업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5 정보보안 전문가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6 통신·방송·통신 장비 기사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3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5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6 섬유·화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5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경سو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제5쪽)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래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 번호 (YYYY.MM.DD)	국적	종별 번호	국적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p style="text-align: right;">수수료 없음</p>
-------	--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번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오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 표시를 합니다.

297mm x 210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8.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9.7.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어권 소지자명 ³⁾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3) 해당자에 한함 4), 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안 내 사 항

-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p>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¹²⁾,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p>	<p>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p>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II))</p>	<p>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II)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9.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남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요구	<input type="checkbox"/>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input type="checkbox"/> 간접적 소득(감면 등) <input type="checkbox"/> 건강 및 의료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해당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조정 []재판정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재발급 사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포함 [] 미포함	[]신규 []재발급 []정보변경 []반납	[]기간만료 []훼손 []분실
	[]신용기능 []직불기능		[]기재사항 변경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카드전환(-) []기타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정보변경 []반납		[]기타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규 []재발급		• 반납사유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록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사망 []양도·증여 []폐차 []등록말소 []기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복지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ITV 수신료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고용 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 []취업지원 및 상담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mm × 297mm [백상지 (80g/m ²) 또는 종질지 (80g/m ²)]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자외등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자외등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자외등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항, 「장애인연금」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관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등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등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본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 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